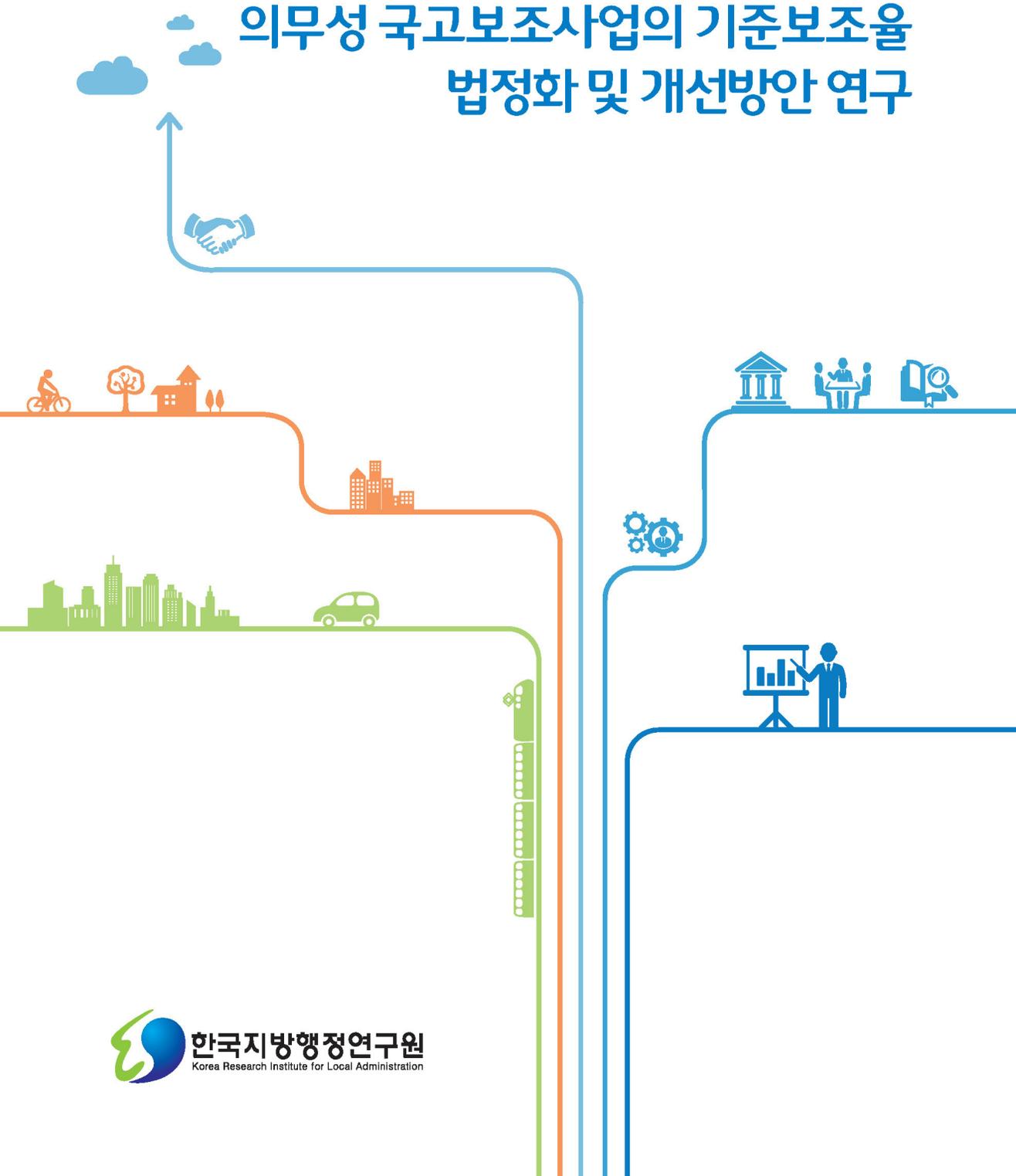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정화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진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 요약

### I. 연구목적

- 대규모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성격의 국고보조사업간에 보조율의 편차가 커 국고보조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사무 및 국가정책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낮게 책정되어 지방비부담의 문제가 발생함
  - 동일한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간 국고보조율이 낮게 책정되는 동시에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국고보조율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설정 및 보조율 법정화
  - ①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② 기준보조율 규정 여부를 분석하여, ③ 법정화 제시
- 5대 복지사업의 보조율 수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5대 복지사업의 사업성격, 보조율 및 국가·지방 자원분담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검토하여, 보조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II. 주요 연구내용 요약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재량 여부가 있는지의 사업성격, 전국적·통일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비 부담 규모, 국가의 책무와 관련 되어 있는 사업의 계속성·영속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의한 연간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 912개 중 149개로 16.3%임
  - 연간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총 19조원으로, 전체 지방비 부담 규모인 21.4조원의 89.1%임
-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149개 중 기준보조율이 법정화되어 있는 사업은 84개로 56.4%임
  - 84개 사업의 총 지방비 부담 규모는 15.4조원으로 지방비 200억원 이상이 국고보조사업 19조원의 80.6%임
  - 보건복지부의 경우 법정화 사업수는 38개 사업 중 23개로 60%정도이며, 연간 지방비 규모는 90%정도임
  - 사업수 면에서 법정화율이 80% 이상인 부처는 고용부, 교육부, 산림청,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등임. 사업수가 많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비법정화율이 30%~70% 수준임
- 전국 단위로 국가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 간 보조율이 상이함
  - 기준보조율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적, 전국표준서비스 필요(national minimum), 국민의 생존권적 성격을 갖는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낮음과 동시에 사업 간 보조율의 격차가 큼
  -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인 영유아보육 사업, 국가의 책무인 예방접종을 보면 기준보조율이 낮으며 국고보조율의 격차가 큼
- 법령상 국고보조율의 규정은 ① 개별 법령 규정, ② 개별 법령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동시 규정, ③ 개별 법령 시행령에서 보조율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따른다는 규정, ④

개별 법령에는 보조근거만 있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 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122호(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에 해당 등임

### III. 정책건의

#### 1. 국고보조율 법정화 방안

#####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방안

-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 보아 위탁금·교부금, 부담금, 일반보조금의 3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위탁금 혹은 교부금적 보조금: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여권발급,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이해관계가 있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기초생활보장 급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역아동센터지원 등)
    -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
  - 일반보조금: 국가가 행정상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의적으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여 지원하는 경우(문화 및 관광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공모사업 및 신청사업)
    - 국가가 일부부담(파급효과, 전국·지역적 사업 여부, 중요도 등 고려)

##### 국고보조율 법령화 방안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개별 법령 혹은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

한 법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 연간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선별하여 개별 법령 혹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사업별로 보조율을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 신규사업 법령화 방안

- 정부의 정책 혹은 부처의 사업 발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신설되기 마련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설시의 국고보조율 결정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함
  - 만약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용이하지 않다면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대상으로 보조율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함

#### □ 임의보조율 결정 방안

- 현재 임의보조율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위탁금·교부금, 부담금, 일반보조금으로 분류하여 부담금적 성격의 사업은 선별하여 보조율을 법령화해야 함
  - 일반보조금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을 규정하거나, 중앙 각 부서의 사업운영지침 등에 보조율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를 적용받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복지사업의 보조율 인상 및 형평화 필요

- OECD 국가의 사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관련 연구 등을 참고 할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 사회복지 관련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전국적 표준서비스 수준을 요하는 복지사업 등은 100%에 근접한 국고보조율 또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 사업이며,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사업은 현재 국고보조율이 낮은 편으로 100% 혹은 높은 보조율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100% 근접 국고보조율, 높은 보조율 적용을 고려해야 함
- 사회복지 주요 사업들이 높은 보조율 이상으로 보조율을 적용하게 되면 보조율의 형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차 례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b>제2장 국고보조사업의 의무성 기준 설정</b> .....	7
제1절 의무적 지출의 성격과 유형 .....	9
1. 경직성 경비의 성격 .....	9
2. 국고보조금의 의무성 유형 구분 .....	14
제2절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와 의무성 기준 설정 ..	18
1. 국고보조사업 유형화와 기준보조율 논의 ..	18
2.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및 기준 설정 ..	21
<b>제3장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및 법정화     실태 분석</b> .....	27
제1절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지방비 부담 .....	29
1. 국고보조사업 현황 .....	29
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분석 .....	32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분석 .....	36
4.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현황 .....	38
제2절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법정화 분석 .....	40
1. 국고보조율 규정의 특성 .....	40
2. 국고보조율 규정 법령 내용 .....	41



3.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규정 .....	53
4.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법정화 현황 ..	54
<b>제4장 주요 사회복지사업 추진체계 분석 .....</b>	<b>63</b>
제1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	65
제2절 기초생활보장사업 .....	73
제3절 기초연금 .....	85
제4절 장애인연금 .....	93
제5절 국가예방접종 .....	100
제6절 종합 .....	104
<b>제5장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운영체계 개선 .....</b>	<b>107</b>
제1절 국고보조율 법정화 방안 .....	109
제2절 주요 복지사업의 보조율 인상 및 형평화 방안 .....	114
<b>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b>	<b>123</b>
<b>〈참고문헌〉 .....</b>	<b>132</b>
<b>〈부록 1〉 일본의 국고보조금제도 .....</b>	<b>135</b>
<b>〈부록 2〉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b>	<b>154</b>



## 표 차례

<표 2-1> 국가 의무지출 사업 .....	13
<표 2-2> 일본의 국고보조금 구분과 유형 예시 .....	16
<표 2-3> 개별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의 판단기준 ..	17
<표 2-4> 산정지표별 가중치 및 점수부여 .....	21
<표 3-1>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수 .....	29
<표 3-2>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규모 .....	31
<표 3-3> 지방비부담 규모별 분포 .....	33
<표 3-4> 지방비부담 1000억원 이상 사업 현황 .....	34
<표 3-5>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추이 .....	36
<표 3-6> 주요 국가최저수준 복지사업별 보조율 .....	38
<표 3-7>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현황 .....	39
<표 3-8> 부처별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현황 .....	39
<표 3-9>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법정화 현황	55
<표 3-10> 부처별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법정화 현황 .....	55
<표 3-11> 20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법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규정 포함) 규정 여부 .....	56
<표 4-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2015년 기준) .....	66
<표 4-2> 아동양육수당의 유형별 지원단가 .....	68
<표 4-3> 주요 영유아보육사업의 사업비 규모 추이와 국고보조율 .....	70
<표 4-4> 주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2015) .....	75
<표 4-5>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수준(2015) .....	75
<표 4-6> 주거급여의 지원내용(2015) .....	76

<표 4-7> 교육급여의 지원내용(2015) .....	76
<표 4-8> 자활급여(자활근로) 지원 내용 .....	77
<표 4-9>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총사업비 추세와 국고보조율 현황 .....	82
<표 4-10> 기초연금 재원 규모 추이 .....	88
<표 4-11> 고령인구규모 추계에 따른 기초연금 규모 추계 .....	90
<표 4-1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단가 및 인원 .....	94
<표 4-13> 장애인연금 재원의 중앙-지방 분담 추이 ...	98
<표 4-14>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재원구성 추이 .....	102
<표 5-1>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	114
<표 5-2>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12년) .....	117
<표 5-3>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제시(안) .....	119
<표 5-4> 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적정 기준보조율 제시안 .....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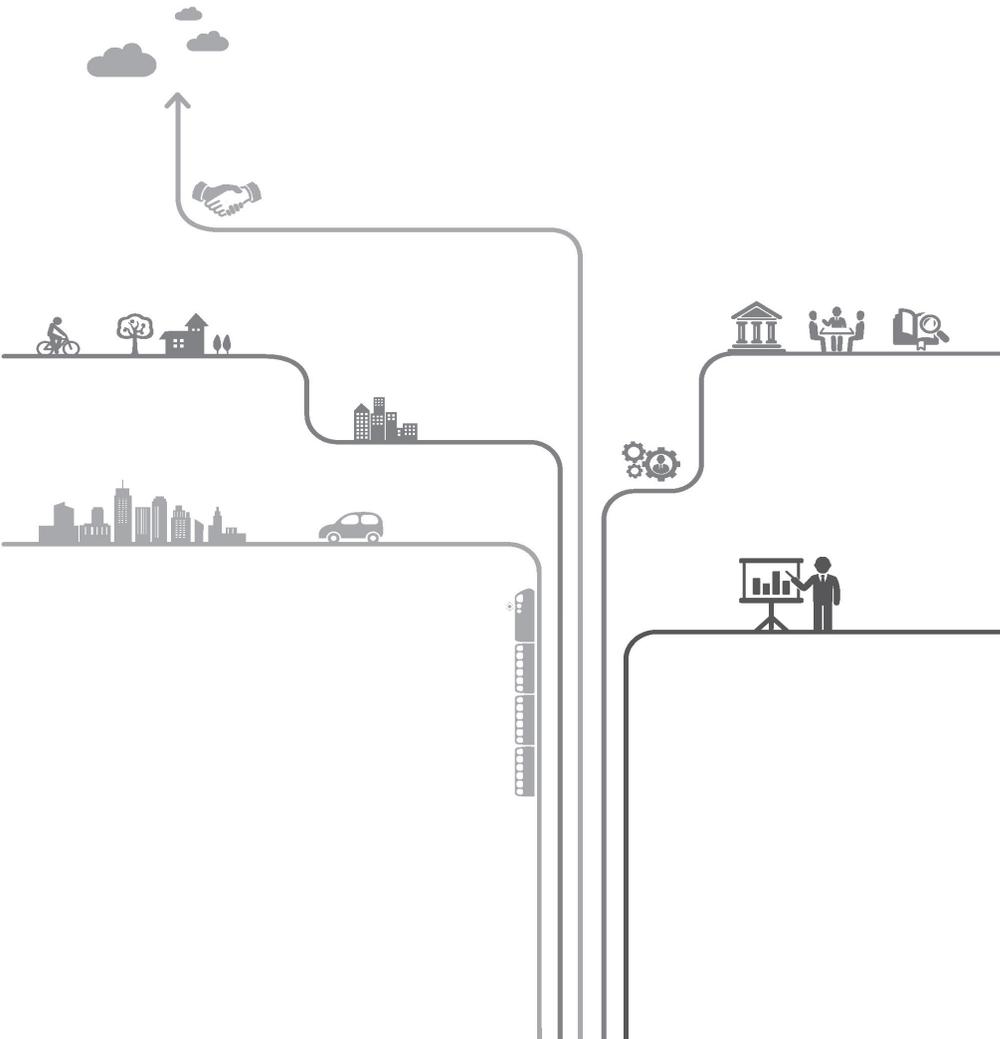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흐름 체계도 .....	6
<그림 2-1> 사회복지사업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한 유형별 분류 기준 .....	20
<그림 3-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비중 추이 .....	32
<그림 3-2> 지방비부담 규모별 분포 .....	33
<그림 3-3>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추이(조원) .....	37
<그림 4-1> 누리과정 교육부담금 부담 추이 .....	67
<그림 4-2> 보육료 지원 절차 .....	69
<그림 4-3>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추이 .....	73
<그림 4-4>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업무처리절차 .....	78
<그림 4-5> 자활사업 추진체계 .....	79
<그림 4-6> 주거급여 업무처리절차 .....	80
<그림 4-7> 주거급여 관련 행정체계 .....	81
<그림 4-8> 최근 5년간 기초연금 재정 규모 추이 .....	89
<그림 4-9> 복지보조사업별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	93
<그림 4-10>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내용 .....	94
<그림 4-11> 장애인연금 급여 유형별 구조 .....	95
<그림 4-12> 장애인연금업무의 처리 흐름도 .....	96
<그림 4-13> 장애인연금사업의 재정지출 추이 .....	97
<그림 4-14>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출 추이 .....	101
<그림 5-1>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08년) .....	115
<그림 5-2>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12년) .....	116
<그림 5-3> 국가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12년) .....	116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부담 개선 필요
  - 저성장 기조로 지방세입 기반이 미약한 가운데, 최근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대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됨
    - 총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2009년 35.5%→2014년 38.2%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요구의 사회복지사업은 사업규모가 매우 커 지방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의 성격을 갖는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율 수준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 2015년 기준 국비 1천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59개 중 법정 기준보조율 사업<sup>1)</sup>은 44개이며, 주요 복지사업 평균보조율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78%, 기초연금 76%, 영유아보육지원 67%, 장애인연금 66%, 국가예방접종 48%임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설정 및 복지사업의 보조율 적정성 검토·개선
  - 전국적·대규모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설정 및 보조율 법정화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을 설정함
    - 현행 보조율 및 기준보조율 규정 여부를 분석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법정화 방안을 제시함
  - 주요 복지사업의 보조율 수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1) 법정 기준보조율 사업이란 개별법 혹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1호~121호로 국고보조율이 정해진 사업을 말함

- 주요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지원,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요 복지사업의 사업성격, 보조율 및 국가·지방 재원분담, 행정절차, 중앙부처의 업무지침 내용, 지방의 자율성 등 전반적·세부적인 사업현황 및 추진체계를 정리함
- 복지사업의 보조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5대 복지사업의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및 보조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황 자료에 의한 경향 분석에 중점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기준 설정과 법정화 분석
  - 우선, 2015년 기준의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격, 전국적 시행, 일정기간 지속, 일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기준 설정
    - 고려기준: 사업성격, 전국적 사업 여부, 계속사업 여부, 지방비부담 일정 규모 이상 등
  - 다음으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현재의 보조율 현황, 기준보조율 규정여부 및 내용을 분석하고, 규정이 미흡한 사업의 보조율에 대하여 기준 보조율 규정화의 필요성 및 방안 제시

5대 복지사업의 보조율 및 추진체계 분석

- 사례조사 대상사업: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사업
- 사례조사 내용: 사업성격, 보조율 및 국가·지방 재원분담, 행정절차, 중앙부처지침 내용, 지방의 자율성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및 세부 현황 검토

## 2. 연구방법

문헌연구: 현황 및 문제점 정리

- 기존 관련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국고보조사업 리스트 및 관련 부처의 사업 지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 검토와 언론 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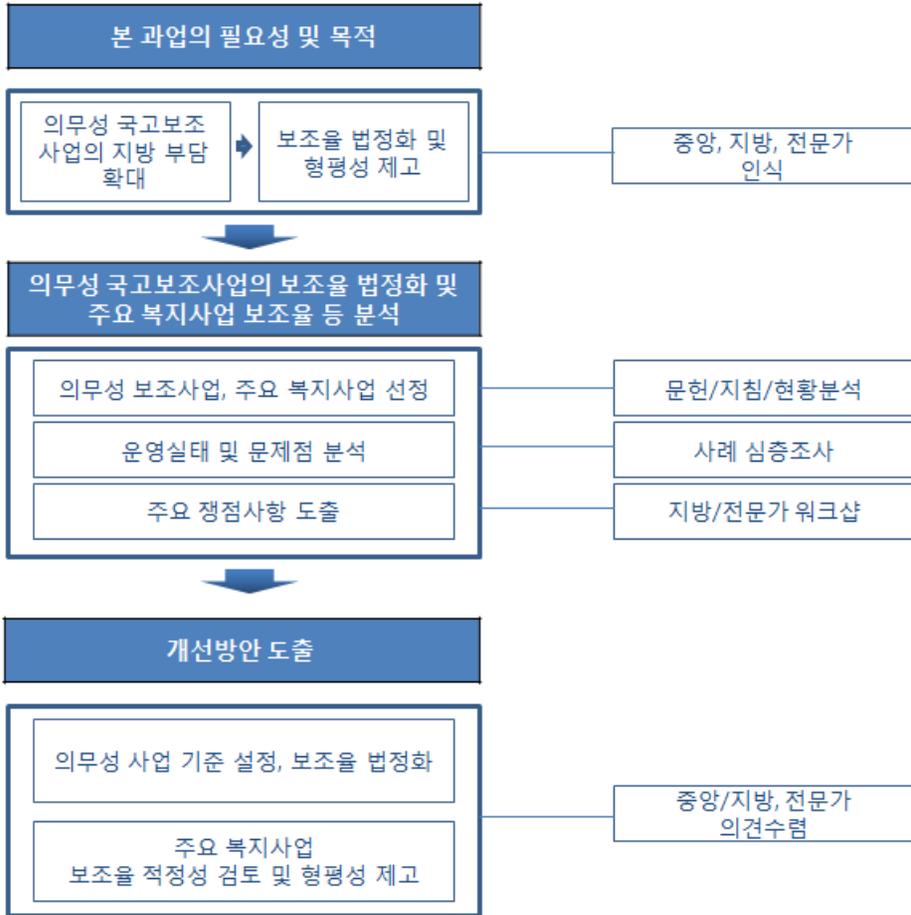
사례조사: 주요 복지사업의 전반적 추진 체계 등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5개 사업
- 사업성격, 정책결정과정(사업, 재원분담 등), 사업지침(사업내용, 지방 자율성 여부),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업무처리절차, 국가지원 및 지방부담 현황쟁점사항, 보조율 조정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반영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기준설정 및 5대 복지사업의 보조율 조정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그림 1-1> 연구흐름 체계도







## 제2장

## 국고보조사업의 의무성 기준 설정

## 제1절 의무적 지출의 성격과 유형

1. 경직성 경비의 성격<sup>2)</sup>

## □ 경직성 경비의 의의

- 경직성 경비(uncontrollable expenditure)<sup>3)</sup>란 법률상 또는 정책상 지출이 결정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이나 기본 정책의 수정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말함(유훈, 2003: 189)
  - 경직성 경비란 예산편성과 심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직성 경비는 한 번 그 사업이 확정되면 폐지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사회복지비 등)

2) 손희준, 지방지출의 경직성 분석(미발표 자료)을 토대로 정리함

3) 정부 예산 가운데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미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거나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예산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규모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경비를 ‘경직성 경비’라고 한다. ① 경직성 경비는 절차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전자는 지출 경로가 다양해서 여러 기관이 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경비(정부투용자,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예비비 등)를 말하며, 후자는 누가 예산운영의 책임을 맡든지 관계없이 일정 사업에 일정 규모의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경비이다. 실질적 경직성 경비에는 일정 자격이 있는 수혜자에게 수당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 지출들이 대표적이다. ② 경직성 경비는 그 성질의 상대적 강도에 따라서 경직성 경비, 상대적 경직성 경비, 비경직성 경비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 지출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경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지방교부세, 이자 등), 정부의 정책이나 약속에 의해서 지출을 하려고 한 것은 경제 여건이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출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직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인건비, 방위비 등), 신규 사업은 비경직성 경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③ 경직성 경비를 정부 수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경직성 경비는 방위비, 지방교부세 등이고 지방정부의 경직성 경비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다(온라인행정학사전 참조).

- 외생적(exogeneous)경직성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함(Weidenbaum, 1997)
  - 첫째, 사회보장관련 기금의 경우 주로 자격급여(entitlement expenditure)로서 자격이 주어지면 반드시 지출이 발생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음
  - 둘째, 항구적 지출(permanent and indefinite appropriations)이 불가피한 경비, 이자지급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경비임
  - 셋째, 보조금의 경우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담금이나 분담금이 법률에 의해 결정되면 이를 자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러한 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이 강제되어 있음
  - 넷째, 계속비 사업(ongoing projects)은 부분적으로 완공되는 사업(partially completed projects)의 경우로서 재량적 검토 없이 처음 주어진 계획대로 지출되어야 할 경직성을 가짐
  
- 경직성 경비는 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것들로, 정부예산 가운데 예산 결정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지출을 말함. 정부예산 가운데 임의로 지출규모를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지출을 총칭해서 경직성 경비라고 하며(Axelrod, 1988), 이러한 세출예산을 통제 불가능한 지출(uncontrollable expenditures)이라고 부르기도 함
  
- 특히, 경직성 예산가운데 법적으로 지출이 정해져 있는 경비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게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인 성질을 가짐(Wildavsky, 1992)
  
- 경직성 경비의 특징
  - 경직성 경비의 특징은 대부분 국가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에 수반되는 경비임
    - 국방유지: 국방이라는 재화는 다른 주체에 의하여 대체적 이행이 불가한

국가 전속적인 성질을 갖음.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결정자가 자의로 결정하게 한다면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고, 또한 재화의 공급체계의 발전이 곤란해짐

- 국민의 생존권 유지: 경직성 경비 가운데 법적으로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의 상당한 부분이 국민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련되는 것임.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음(대한민국 憲法 제31조 ①)
- 지방자치 실현: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 지역이 균형적이고 특성있게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함
- 기본적인 교육욕구의 충족: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음. 정부는 국민각자가 보호하고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기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용, 교재 및 경비 등을 부담하고 있음
- 정부신뢰의 보호: 정부가 재원을 차입하는 경우, 정부의 조세징수권이 담보가 되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됨.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함.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입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이들 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

### ○ 국가재정법상 개념

- 의무지출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직접 그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이 없는 지출, 의무지출은 그 지출의 규모가 법률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 지출규모에 대한 정부의 재량이 매우 제한된 지출

-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그 밖의 지출, 그러나 예산 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재량 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지출의 특성상 정부의 재량 여지가 매우 적은 ‘경직성 지출’과 그 밖의 일반적인 재량지출인 ‘임의지출’로 구분함
- 재량지출의 경직성 판단 기준
  - 법률상 임의지출이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경직성 지출로 분류
  - 계약이행·국가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출: 경직성 지출
  -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지출(청사유지비, 전산운영경비 등 기관유지 경비 또는 치안·소방·징세·식품안전·법집행 등을 위한 경비): 경직성 지출 분류
  -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분류
  - 정책적 고려사업(정책적 의지가 강한 주요 정책사업, 재해복구 등): 경직성 지출

○ 우리나라 의무지출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서는 지출의 성격, 결정구조, 지출주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함
- 분야별로 보면, ① 국세에 연동되어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금(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② 연금급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이전지출, 보육 관련 등의 복지분야 지출, ③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등의 농림분야 지출, ④ 국채이자 등의 이자지출, ⑤ 국제기구 분담금 등의 기타분야 지출로 구분함

&lt;표 2-1&gt; 국가 의무지출 사업

분 야	의무지출	근거법률	
교 부 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복 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법 등
	보 건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금, 국고지원금 등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기초생활 보 장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
	보 육	영유아보육료 등	영유아보육법 등
	장 애 인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연금법 등
	노 동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 훈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농 립	쌀소득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등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이자지출	국공채 및 차관 이자 등		
기 타	국제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제조약
	보 상	납북피해자 보상 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 타	정당보조금, 선거보전금 등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2)

### ○ 미국의 의무지출

- 복지수급 프로그램(means tested program)
  - 의료보장(medicaid)
  - 식권지원(food stamps)
  -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 소득보전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가족지원(family support)
  - 학비용자금(student loans)
  - 군인연금(veterans' pension)
  - 기타

- 대규모 비수급(large non-means tested)
  - 의료보험(medicare)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 기타 대규모 비수급(other non-means tested)
  - 연방공무원 인건비(federal civilian)
  - 군인(military)
  - 실업보조(unemployment compensation)
  - 농산물 가격지원(farm price supports)
  -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
  - 재향군인 급부금(veterans' benefits)
  - 기타(other)

지방의 입장에서 본 의무성의 기준

- 국가의 의무지출은 지방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의무성이 있음
-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도 의무성이 있음. 국가에서 이들 경비에 대하여 준의무지출로 분류하기도 하였음
-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부담금은 경직성이 강한 경비로, 이종 공모 등 자율적 신청에 의하지 않는 법령, 정책, 국가기본계획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 성격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 2. 국고보조금의 의무성 유형 구분

지출목적(경비성질)에 의한 분류

- 국고보조금은 지출 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교부금·부담금·장려적 보조금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교부금(交付金)이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임사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전액이 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함

- 예를 들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국민투표 비용, 국가통계 조사비용, 외국인등록사무비용, 검역비용 등
- 외교부의 여권발급사무, 농림수산식품부의 발농업직불제·쌀농업보전직불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국고위탁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재정법 제10조의 4(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경비)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부담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負擔金)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국고 지출금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책임을 갖는 사무에 지출하는 경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부담 구분에 기초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조금임
- 일반행정비 국고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기초로 실시해야 하는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건설사업비 국고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경제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할 법령에서 정한 토목 및 건설사업비로서,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함
- 재해복구비 국고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법령에서 정한 재해 관련 사무로서, 재해구조(救助)사업, 도로·하천 등 재해복구사업에

국가는 경비를 부담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이러한 국고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는 포괄적인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고부담금의 대상범위, 국고부담율, 지출근거 규정 등은 개별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일본 지방재정법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의 규정) “제10조~제10조의 3에 규정된 경비의 종목, 산정기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법률 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補助金)이란 국가가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국가가 시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전자는 국가가 국가적 측면에서 일정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하는 것으로 장려적 보조금이라 함
-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에 대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재정원조적 보조금이라 함

※ 일본 지방재정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표 2-2> 일본의 국고보조금 구분과 유형 예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회의원선거비, 통계조사비, 검역비 등	의무교육, 생활보호, 공공사업, 재해복구 부담금	지방(도도부현) 경찰비 보조금,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비용 전액 국가 지출	보조율 법령 또는 정령 규정	국가 임의적 지출

- 지출목적(경비성질)별로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을 분류할 경우 교부금(위탁금)과 부담금은 의무성이 강하며, 보조금은 재량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은 국고지출금(통상 국고보조금)을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협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삼위일체 개혁의 보조금 개혁에서 국고부담금을 의무성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장려적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주로 장려적 보조금을 개혁(축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 배분방식에 의한 분류

- 국고보조금은 배분방식에 따라 개별 국고보조금과 포괄보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개별보조금은 단일의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함
  - 포괄보조금은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법정공식을 이용하여 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선택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보조금임
- 개별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2-3> 개별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의 판단기준

개별보조금	포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 표준 서비스를 요하는 사업</li> <li>- 전국적 최저수준으로 요하는 사업</li> <li>- 순국가사무를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li> </ul> </li> <li>○ 보조금 배분에 있어 사업별로 정액 또는 정률의 보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li> <li>○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 선호가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 표준 서비스를 요하지 않는 사업</li> <li>- 전국적 최저수준으로 요하지 않는 사업</li> <li>-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사업</li> </ul> </li> <li>○ 보조금의 배분과정에 일정한 배분공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li> <li>○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li> </ul>

자료: 임성일·서정섭(1991:101-102)

-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지역발전사업들에서 적용됨
  - 생활기반계정 사업들은 보조금의 배분과정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배분됨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사업들은 지방의 신청, 공모에 의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성 성격이 약함

## 제2절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와 의무성 기준 설정

### 1. 국고보조사업 유형화와 기준보조율 논의

- 임성일 외(2012)는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음
  - (1) 사업 파급효과(외부효과 또는 누출효과): 사업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인지, 광역적인지, 국지적인지에 따라 구분
  - (2)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 국가표준수준(national standard): 국가최저수준 혹은 국가표준수준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중요성을 고려하여 높은 보조율을 설정
  - (3) 의무적 사업, 비의무적 사업(mandatory, entitlement) : 의무적 사업인지 비의무적 사업인지를 구분하여 의무적 사업이라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획득하며, 비의무적 사업인 경우 나머지 4가지 유형화 기준을 통해 적격성을 점검
  - (4) 사업 규모: 사업의 규모는 사업 파급효과와 더불어 유형화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음
  - (5) 국가정책: 국가정책 중에서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

고보조사업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최병호 외(2012)는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음
  - (1) 사업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인지, 지역적인지, 국지적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파급효과 크기에 따라 국비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 (2) 사업성격: 국가의무사업인지 국가시책사업인지 일반사업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국가의무사업의 경우 국비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 (3) 사업주체: 사업의 주체가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4) 사업비 규모: 재원 규모가 클수록 사업의 외부효과나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 또한 커질 것이므로 국비 부담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최병호 외(2012)는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유형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1) 사업의 사회적 성격: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복지 분야의 국고 보조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사회적 반투자, 일상생활지원으로 유형화되며, 기초생활 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제안
  - (2) 지방정부의 집행재량: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재량이 클수록 기준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
  - 상기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사회복지보조사업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90%에서 50%까지 차등 보조율을 제안하고 있음

<그림 2-1> 사회복지사업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한 유형별 분류 기준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격		
		1. 기초생활보장 (중앙정부 책임)	2. 사회기반 투자 (중앙·지방 협력)	3. 일상생활 지원 (지방자치단체 책임)
집행재량	1. 낮음	Type I (생계급여) (90%)	Type II (80%)	Type III (70%)
	2. 중간	Type II (지역자활센터 운영) (80%)	Type III (노인돌봄) (70%)	Type VI (60%)
	3. 높음	Type III (70%)	Type VI (청소년 여가지원) (60%)	Type V (경로당 지원) (50%)

출처: 최병호 외(2012:121)

○ 이원희 외(2013)는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 개념들을 제시함

- (1) 국민적 최저한의 보장: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방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무위탁이므로 국비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 (2) 외부성의 크기: 보조 사업에 의해 산출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의 크기와 범위를 나누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국지적, 지역적, 광역적, 전국적 등으로 구분하여 후자 쪽으로 갈수록 국비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 (3) 공동체의 의미: 국민적 일체감을 위한 사업이라면 국가적 사무에 해당되므로 국비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고 제안함
- 상기 3가지 유형화 기준을 이용하여 각 유형의 점수를 평가하고 이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지수를 만든 후 100%, 80%, 60%, 40%의 4단계에 해당하는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대

안으로 제시함

- 내셔널미니멈 > 외부효과 > 공동체의미의 순으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함을 부여하고 사업별로 이 3가지를 판정하여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표 2-4> 산정지표별 가중치 및 점수부여

산정지표	가중치	점수부여
국민적 최저한의 보장	0.5	매우 높음 : 81~100
		높음 : 61~80
		보통 : 41~60
		낮음 : 21~40
		매우 낮음 : 0~20
외부성의 크기	0.3	전국적 : 100점
		광역간 : 80점
		광역내 : 60점
		기초간 : 40점
		기초내 : 20점
공동체의 의미	0.2	매우 높음 : 81~100
		높음 : 61~80
		보통 : 41~60
		낮음 : 21~40
		매우 낮음 : 0~20
합계	1.0	-

## 2.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및 기준 설정

### 가.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 의무성 지출이란 법률상 또는 정책상 지출이 결정되어 있어 법률 개정이나 기존 정책의 수정이 없는 지출을 해야 하는 경비임
  - 국가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 중 경직성의 강도가 약하지 않은 지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이 해당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해관계가 있고,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법령 및 국가의 정책 등에 따라 지방비를 의무적·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성격을 규정 할 수 있음. 사업의 성격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기초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행정(생활보호, 의무 교육, 노인·아동복지·장애인 복지, 보육,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직업능력개발, 산림병충해 예방 등)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경제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할 법령에서 정한 사무(도로·하천, 해안·항만, 농림수산업 시설, 도시계획사업, 공영주택, 복지시설 건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법령에서 정한 재해 관련 사무(각종 재해 복구 사업 등)
-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의 자율·임의 선택사업,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대부분 의무성이 있음
  - 다만, 의무성의 중요도, 강약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의 판단기준으로 사업성격, 사업규모, 사업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성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나.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판단기준

##### 기준 1 : 사업성격 측면

- 국가의 책무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의무화되어 있는 사무로 전국적 표준적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유지를 강제적, 사회적 원칙으로 반드시 해야

## 하는 사업

- 전국적 표준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
  -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업
  - 공동체 의식, 공공성을 갖는 사업
- 이들 사업은 법령 등에서 의무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성이 거의 없음. 이러한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함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없이도 일률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거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재량여지가 거의 없는 보조사업 등
    - 전국적·통일적으로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입장에서선 의무성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무성 사업임
-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음
- 예, 사회보장사업(공공부조 등) 및 국가 의무지출 사업 등

## □ 기준 2 : 사업규모 측면

- 국가의 채무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분담해야 하는 사업
-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 사업
  - 사업규모로 볼 때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가 전국적, 혹은 광역적인 사업
  - 지방의 부담이 일정 규모 이상 넘으면 재정압박으로 작용하는 사업
- 규모 기준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기준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함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
  - 이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이 됨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 (생략)

-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의뢰심사 규모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설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3조  
중앙의뢰심사 :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기준으로 설정
  - 지방비 부담 200억원으로 설정으로 설정하는 방안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 사업비 규모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총사업비 기준보다는 지방비부담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비 부담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그 규모를 1,000억원, 500억원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성이 적으며, 200억원은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기준임

- 또한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중앙의 국고보조사업 신설시 평가해야하는 의무기준임
- 사업규모 기준은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중 중앙관서의 평가 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과 연계 필요함
  - 신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으로 기존 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으로 의무성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기준 3 : 사업계속성 측면

- 경비 특성상 계속사업은 재량성없이 법령의 계획대로 지출되어야 할 경직성을 가짐
  - 항구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사업
  -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일정기간(예,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
- 정책이 항구적이거나 일정기간 유지가 필요한 사업
  - 사업종료 없이 매년 계속 시행되는 사업(예, 기초연금, 문화재 보수 등)
  - 종료일이 정해진 단일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성격상 계속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예, 도시철도건설, 도로건설 사업 등)
  - 일정기간 필요한 사업(예, 재해복구) 등

#### 다.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

- 종합컨대,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법령의 규정대로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여부의 재량성을 갖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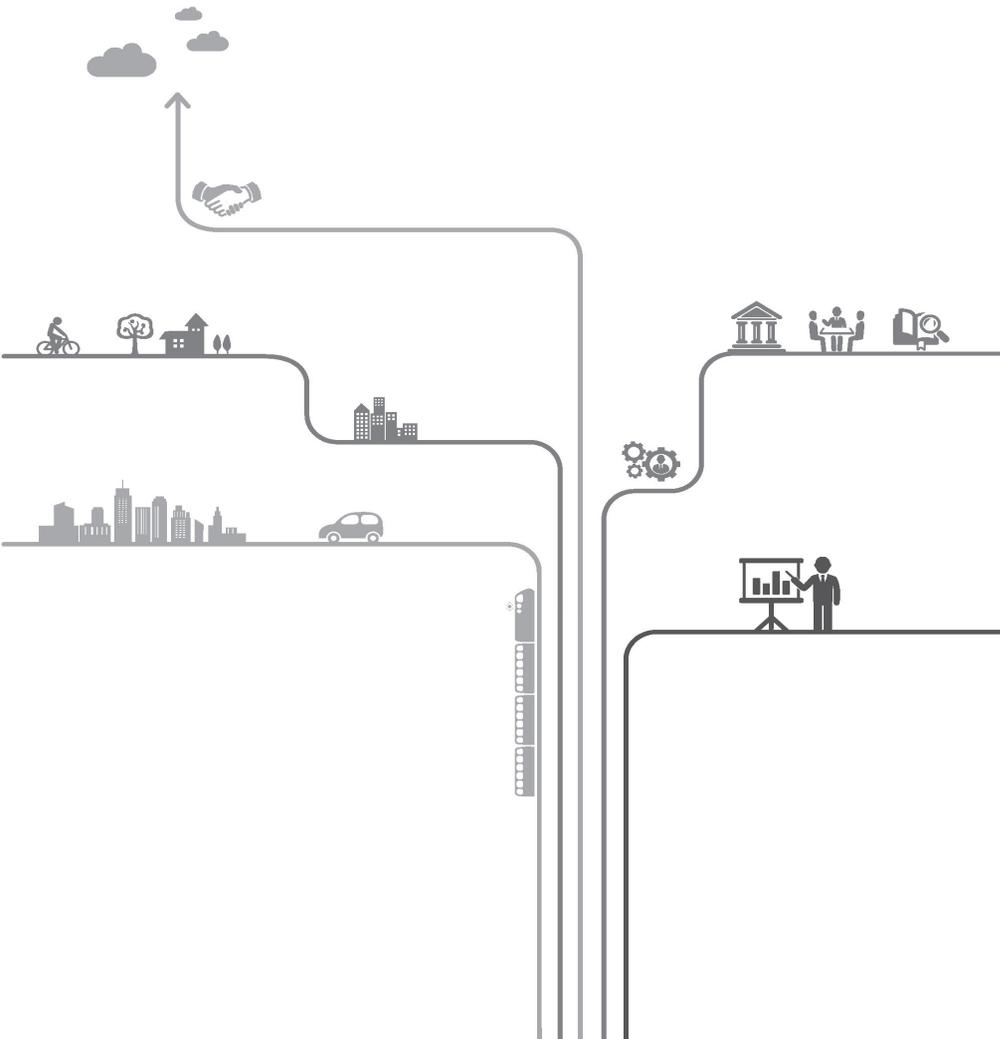
못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고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성이 부여되지만,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대상기준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5조의 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경우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 사업을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정함이 타당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지속적 사업이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과, 지역은 다르지만 영속적인 사업(예, 도시철도나 도로건설 등)을 말함

# 제3장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및 법정화 실태 분석

제1절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지방비 부담  
제2절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법정화 분석





## 제3장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및 법정화  
실태 분석

## 제1절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지방비 부담

## 1. 국고보조사업 현황

## □ 사업수

- '15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912개이며, 국토교통부 172개, 보건복지부 143개, 환경부 89개, 문화체육관광부 85개, 농림축산식품부 83개, 해양수산부 68개의 6개 부처가 70% 이상을 점함

&lt;표 3-1&gt;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수

(단위: 개수, %)

부처	2011	2013	2015	비중('15 기준)
경찰청	4	3	3	0.33
고용노동부	22	24	27	2.96
공정거래위원회	1	1	1	0.11
교육부	6	1	1	0.11
국가보훈처	8	9	9	0.99
국민권익위원회	1	-	-	-
국방부	1	1	2	0.22
국토교통부	218	165	172	18.86
기획재정부	4	4	4	0.44
농림축산식품부	107	88	83	9.10
해양수산부	-	70	68	7.46
농촌진흥청	20	21	20	2.19
대법원	1	1	1	0.11
문화재청	16	17	17	1.86
문화체육관광부	94	111	85	9.32

부처	2011	2013	2015	비중('15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	9	9	0.99
법무부	4	2	5	0.55
보건복지부	151	144	143	15.68
산림청	41	32	31	3.40
국민안전처	20	18	29	3.18
식품의약품안전처	6	8	11	1.21
행정자치부	44	41	34	3.73
여성가족부	33	33	35	3.84
외교부	1	3	2	0.22
중소기업청	7	5	6	0.66
산업통상자원부	30	24	20	2.19
통일부	2	3	3	0.33
특허청	1	1	-	0.00
행복청	-	1	-	0.00
새만금개발청	-	-	2	0.22
환경부	158	92	89	9.76
합계	1,101	932	912	100.00

□ 예산규모

- '15년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66.3조원이며, 보건복지부 36.3조원(54.74%), 환경부 6.4조원(9.63%), 농림축산식품부 6.2조원(9.41%), 국토교통부 5.4조원(8.13%), 문화체육관광부 3.1조원(4.69%)으로, 이들 부처가 87%를 점함
  - 보건복지부는 143개 사업에 36.3조원의 국고보조금 규모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55% 정도를 점함

&lt;표 3-2&gt;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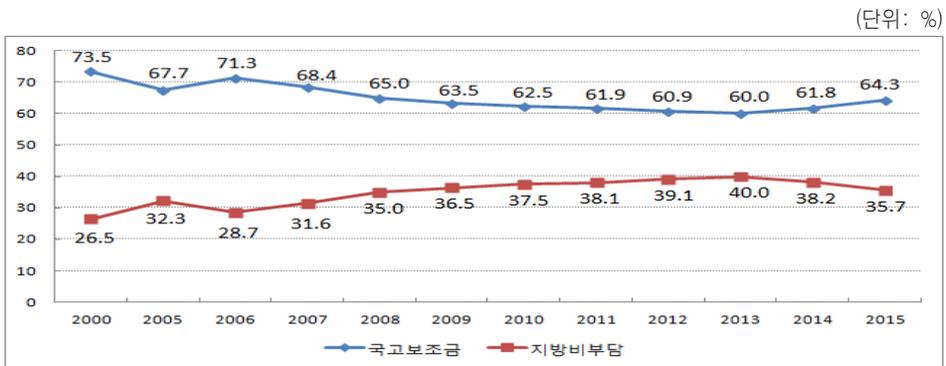
구분	2011	2013	2015	비중('15 기준)
경찰청	39,193	27,025	39,703	0.06
고용노동부	103,504	209,357	282,372	0.43
공정거래위원회	221	228	228	0.00
교육부	369,418	272,500	9,835	0.01
국가보훈처	1,286	8,973	4,701	0.01
국민권익위원회	360	-	-	-
국방부	234	40	7,010	0.01
국토교통부	5,532,348	5,444,494	5,392,742	8.13
기획재정부	185,983	176,254	83,043	0.13
농림축산식품부	5,900,785	6,438,602	6,239,786	9.41
해양수산부	-	1,167,883	1,147,319	1.73
농촌진흥청	271,373	300,571	346,499	0.52
대법원	20,500	20,500	20,500	0.03
문화재청	295,638	455,676	567,915	0.86
문화체육관광부	2,699,281	2,932,125	3,108,822	4.69
미래창조과학부	-	86,526	63,120	0.10
법무부	50,317	54,178	76,075	0.11
보건복지부	21,982,173	28,151,058	36,293,949	54.74
산림청	1,596,857	1,632,122	1,718,695	2.59
국민안전처	1,070,747	1,335,158	1,856,359	2.80
식품의약품안전처	15,042	29,417	83,617	0.13
행정자치부	1,837,957	1,496,536	993,314	1.50
여성가족부	541,757	584,823	716,768	1.08
외교부	4,560	7,370	8,470	0.01
중소기업청	321,613	291,010	157,892	0.24
산업통상자원부	1,571,875	766,889	684,833	1.03
통일부	5,478	5,703	5,431	0.01
특허청	22,323	1,000	-	-
행복청	-	7,600	-	-
새만금개발청			7,396	0.01
환경부	5,663,942	6,418,041	6,385,507	9.63
합계	50,104,764	58,321,659	66,301,901	100.00

## 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분석

###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비중

- 2000년 지방비 부담 비중이 26.5%에서 2013년 40.0%로 13.5% 정도 높아져 정점을 이룬 후 최근 2년 동안 완화되어 2015년 35.7%로 낮아졌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증가되었음

<그림 3-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비중 추이



### □ '1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분포

- 지방비부담 규모가 1000억원 이상 사업은 41개 사업, 500-1000억원 사업은 23개 사업이며,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도 169개 사업임
  - 국고보조사업 전체적으로 100억원 이상 사업이 209개(22.7%)이며, 100억원 미만 사업은 712개(77.3%)임

&lt;표 3-3&gt; 지방비부담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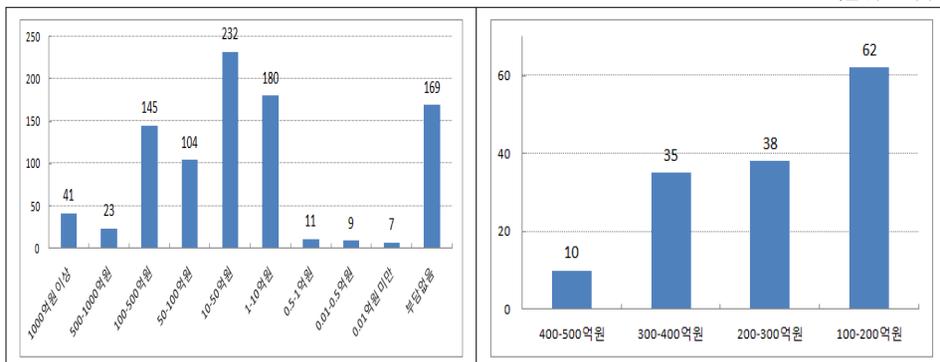
(단위: 개수, %)

지방비부담	사업수	비중
1,000억원 이상	41	4.5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3	2.5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145	15.7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04	11.3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32	25.2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80	19.5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11	1.2
0.01억원 이상-0.5억원 미만	9	1.0
0.01억원 미만	7	0.8
0(부담없음)	169	18.3

-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사업은 145개 사업이며, 이를 세분할 경우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62개 사업,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사업 38개 사업, 300억원 이상-400억원 미만 사업 35개 사업, 4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사업 10개 사업임

&lt;그림 3-2&gt; 지방비부담 규모별 분포

(단위: 개수)



□ 지방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의 특성

- 지방비 부담 1000억원 이상 사업 41개 중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13개 사업임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 보육돌봄서비스의 사회복지분야 7개 사업이 지방비부담이 가장 높은 사업임
  - 지방비부담은 기초연금 2조 4,456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양육수당 포함) 및 보육돌봄서비스 2조 6,220억원,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2조 4,039억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지원사업(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289억원, 국가예방접종2,994억원, 어린이집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3,709억원임

<표 3-4> 지방비부담 100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총사업비	국고지원	지방비부담	보조율
기초연금지급	10,008,986	7,563,388	2,445,599	75.6
영유아보육료 지원	4,554,799	3,047,366	1,507,433	66.9
의료급여경상보조	5,985,016	4,532,692	1,452,324	75.7
생계급여	3,373,473	2,698,778	674,695	8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77,950	1,101,768	576,182	65.7
보육돌봄서비스	1,035,302	496,945	538,357	48.0
지방하천 정비	1,155,071	675,400	479,671	58.5
하수관거정비	1,317,734	854,799	462,935	64.9
재해위험지역정비	770,846	385,423	385,423	50.0
노인일자리 운영	653,298	281,750	371,548	43.1
일반농산어촌개발	1,207,973	849,564	358,409	70.3
문화시설확충및운영(생활)	471,209	127,837	336,732	27.1
체육진흥시설지원	470,400	141,120	329,280	30.0
국가예방접종실시	556,259	256,843	299,416	46.2
장애인연금	848,896	561,443	287,453	66.1
주거급여	1,384,176	1,107,341	276,835	80.0

국고보조사업	총사업비	국고지원	지방비부담	보조율
하수처리장 확충	563,972	328,464	235,508	58.2
장애인활동지원	686,310	452,727	233,583	66.0
관광자원개발	445,956	222,978	222,978	50.0
어린이집 지원	400,390	177,636	222,754	44.4
소하천정비(생활)	440,834	220,642	220,192	50.1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지급	569,941	362,070	207,871	63.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33,465	427,763	205,702	67.5
생태하천복원사업	445,763	278,865	166,898	62.6
숲가꾸기	319,448	161,567	157,881	50.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5,834	152,917	152,917	50.0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524,141	371,963	152,178	71.0
도시침수대응	393,438	242,416	151,022	61.6
지역아동센터 지원	284,480	136,347	148,133	47.9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326,879	180,200	146,679	55.1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	292,949	146,713	146,236	50.1
월예시설현대화	372,726	83,668	142,962	22.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315,903	180,680	135,223	57.2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412,703	280,000	132,703	67.8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54,801	91,315	132,256	25.7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85,504	266,034	119,470	69.0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203,978	84,900	119,078	41.6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	266,666	150,000	116,666	56.3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398,747	295,411	103,336	74.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207,183	104,167	103,016	50.3
노후소방장비 한시적지원	200,000	100,000	100,000	50.0

주: 음영 부분의 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사업임

###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분석

□ 지방의 사회복지지출의 특성

- 지방의 사회복지지출은 2008년 이후 보육, 노인,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부문의 복지정책 확대 및 강화로 증가하였음
  - 지방의 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기준 총지출 173.3조원 중 44.1조원으로 25.4%이며, 2008-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0.4%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정도임
  - 지방의 사회복지지출은 전체적으로 91.4%가 보조사업임(시도비보조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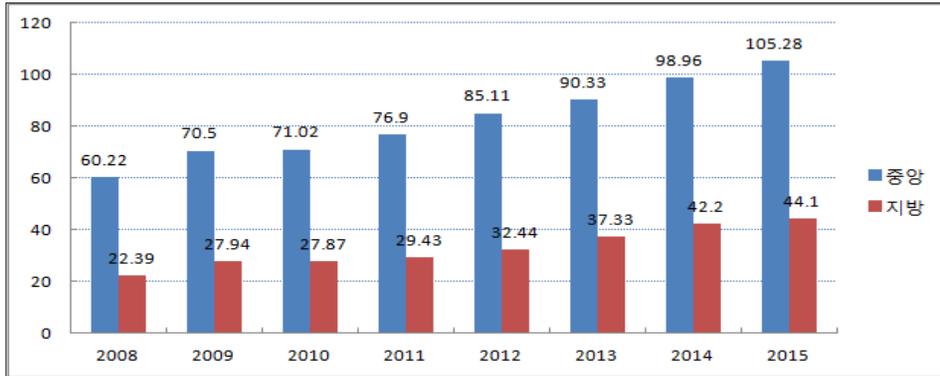
<표 3-5>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중앙	총지출	279.6 (-)	316.4 (13.2)	299.4 (-5.4)	319.1 (6.6)	335.4 (5.1)	351.6 (4.8)	362.4 (3.1)	382.4 (5.5)	4.7
	복지/보건	66.07 (-)	77.63 (17.5)	78.43 (1.0)	84.28 (7.5)	92.88 (10.2)	99.1 (6.7)	108.13 (9.1)	115.68 (7.0)	8.4
	사회복지	60.22 (-)	70.5 (17.1)	71.02 (0.7)	76.9 (8.3)	85.11 (10.7)	90.33 (6.1)	98.96 (9.6)	105.28 (6.4)	8.4
	보건	5.85 (-)	7.13 (21.9)	7.41 (3.9)	7.38 (-0.4)	7.77 (5.3)	8.77 (12.9)	9.17 (4.6)	10.4 (13.4)	8.8
	(A/B)	23.6	24.5	26.2	26.4	27.7	28.2	29.8	30.3	
지방	총지출	125 (-)	149.7 (19.8)	138.6 (-7.4)	141.2 (1.9)	150.3 (6.4)	160.6 (6.9)	180.9 (12.6)	173.3 (-4.2)	5.1
	복지/보건	24.39 (-)	30.41 (24.7)	30.21 (-0.7)	31.53 (4.4)	34.66 (9.9)	39.79 (14.8)	44.93 (12.9)	46.8 (4.2)	10.0
	사회복지	22.39 (-)	27.94 (24.8)	27.87 (-0.3)	29.43 (5.6)	32.44 (10.2)	37.33 (15.1)	42.2 (13.0)	44.1 (4.5)	10.4
	보건	2 (-)	2.47 (23.5)	2.34 (-5.3)	2.1 (-10.3)	2.22 (5.7)	2.46 (10.8)	2.73 (11.0)	2.7 (-1.1)	4.9
	(A/B)	19.5	20.3	21.8	22.3	23.1	24.8	24.8	27.0	

&lt;그림 3-3&gt;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추이(조원)

(단위: 조원)



#### □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보조율

- 전국 단위로 국가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 간 보조율이 상이함
  - 기준보조율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적, 전국표준서비스 필요(national minimum), 국민의 생존권적 성격을 갖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낮음과 동시에 사업 간 보조율의 격차가 큼
  -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인 영유아보육 사업, 국가의 책무인 예방접종의 기준보조율이 낮으면 국고보조율의 격차가 큼
- 기초생활보장적 성격의 사업,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국가의 주요한 책무 사업은 기준보조율이 100%이거나 높은 보조율(70% 이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표 3-6> 주요 국가최저수준 복지사업별 보조율

사업명	<현행>		비고																					
	기준보조율	평균보조율 (‘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서울) 50% (지방) 80%	78.0%	·차등보조율 적용 ±10%p (사회복지비 지수, 재정자주도)																					
영유아보육	(서울) 35% (지방) 65%	66.9%	·차등보조율 적용 ±10%p (사회복지비 지수, 재정자주도)																					
기초연금	40~90%	75.6%	·차등보조율 적용 : 재정자주도, 노인인구 고려 ·기초연금 보조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th> <th colspan="3">자치단체 노인인구 비율</th> </tr> <tr> <th>14% 미만</th> <th>14-20%미만</th> <th>2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재정 자주도</td> <td>90%이상</td> <td>40%</td> <td>50%</td> <td>60%</td> </tr> <tr> <td>80-90%미만</td> <td>50%</td> <td>60%</td> <td>70%</td> </tr> <tr> <td>80%미만</td> <td>70%</td> <td>80%</td> <td>90%</td> </tr> </tbody> </table>			자치단체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20%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이상	40%	50%	60%	80-90%미만	50%	60%	70%	80%미만	70%	80%	90%
		자치단체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20%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이상	40%	50%	60%																				
	80-90%미만	50%	60%	70%																				
	80%미만	70%	80%	90%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66.1%																						
국가예방접종	(서울) 30% (지방) 50%	46.2%																						

#### 4.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현황

- 2015년 연간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 912개 중 149개로 16.3%임
  - 연간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총 19조원으로, 전체 지방비 부담 규모인 21.4조원의 89.1%임

&lt;표 3-7&gt;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현황

지방비 부담	사업 수 (개, %)				예산 규모 (억원, %)			
	개수	(누적)	비중	(누적)	예산	(누적)	비중	(누적)
5,000억원 이상	6		0.7		71,946		33.7	
1,000억원~5,000억원	35	(41)	3.8	(4.5)	75,629	(147,575)	35.4	(69.0)
500억원~1,000억원	23	(64)	2.5	(7.0)	15,860	(163,435)	7.4	(76.5)
200억원~500억원	85	(149)	9.3	(16.3)	26,975	(190,410)	12.6	(89.1)
100억원~200억원	67	(216)	7.3	(23.7)	9,354	(199,763)	4.4	(93.4)
50억원~100억원	104	(320)	11.4	(35.1)	7,261	(207,024)	3.4	(96.8)
20억원~50억원	140	(460)	15.4	(50.4)	4,592	(211,616)	2.1	(99.0)
20억원 미만	452	(912)	49.6	(100)	2,160	(213,775)	1.0	(100)

- 부처별로 보면 복건복지부가 사업수 38개(25.5%), 10조 933억원(53.1%)로 가장 많으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에서 각각 24개(16.1%), 19개(12.8%), 15개(10.1%), 11개(7.4%)이며, 각각 지방비가 1조원 이상을 넘고 있음

&lt;표 3-8&gt; 부처별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개수, 억원, %)

부처	사업수(비중)	지방비(비중)	부처	사업수(비중)	지방비(비중)
복지부	38(25.5)	100,933(53.1)	고용부	1(0.7)	255(0.1)
국토부	24(16.1)	18,674(9.8)	교육부	1(0.7)	338(0.2)
환경부	19(12.8)	19,575(10.3)	산림청	9(6.0)	6,202(3.3)
농림부	15(10.1)	11,756(6.2)	안전처	6(4.0)	8,649(4.5)
문체부	11(7.4)	12,566(6.6)	문화재청	1(0.7)	1,327(0.7)
산업부	6(4.0)	2,407(1.3)	농진청	2(1.4)	867(0.5)
행자부	5(3.4)	2,866(1.5)	식약처	1(0.7)	328(0.2)
여성부	5(3.4)	1,506(0.8)	중기청	1(0.7)	476(0.3)
해수부	4(2.7)	1,498(0.8)			

## 제2절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법정화 분석

### 1. 국고보조율 규정의 특성

- 법령상 국고보조율의 규정은 ① 개별 법령 규정, ② 개별 법령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시 규정, ③ 개별 법령 및 시행령에서 보조율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다는 규정, ④ 개별 법령에는 보조 근거만 있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1호~121호 규정), 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122호(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에 해당
- 개별 법령에 국고보조율을 규정한 사업은 기초연금, 광역교통시설지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저장버스도입보조, 재해대책비 등임
- 개별법령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로 동시에 국고보조율을 규정한 사업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국가예방접종,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연금 등임
- 개별법의 시행령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위임한 사업은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영유아보육,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활동지원 등임
- 개별 법령에 보조 근거 있으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하천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소하천정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숲가꾸기 등임
- 개별 법령에 보조 근거 있으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규정(122호에 해당)의 사업은 관광진흥구축, 친환경 축산, 일반농산어촌개발, 원예시설현대화,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선진도서관, 미래지향서비스 환경 개선, 과학관건립 및 운영 등임

## 2. 국고보조율 규정 법령 내용

### □ 개별 법령에 보조율 규정

####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국가의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음
-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에는 보조율(40-90%) 규정을 두고 있음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 2에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

#### ● 국가부담비율

구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재정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 지표의 산식

지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재정자주도	가. 산식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다.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전 3년간 평균치(최종예산 기준)
노인인구비율	가.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인구수}}{\text{전체인구수}} \times 100\%$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 다.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 광역교통시설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에 제1항(광역도로) 및 제2항(광역철도)에서 국고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의 보조율에 따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광역도로사업(사가정-암사광역도로건설,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50%로 규정하고 있음
- 광역철도(별내선 복선전철, 하남선 복선전철)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서울 50%, 지방 70%의 국고조율을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광역도로: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 (생략)

○ 재정비촉진사업지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서 10~50%의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음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보조금액의 한도액(1,000억원)을 정하고 있음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생략)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 ○ 저상버스도입보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서울 40%, 지방 50%로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② ----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 ○ 재해대책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서 국가의 부담 및 부담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

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  
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7.1.시행) 제4  
조 2항의 [별표 1:재해복구 비용분담 기준]에 보조율을 규정함
-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 개별 법령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시 규정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에 보조 근거 규정함
- 수도법 시행령 제66조(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에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인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 국고보조율은 총사업비의  
30%로 규정하고 해당단체의 생산원가, 수도요금 고려하여 20% 가감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28호)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의 보조율은 70%로 규정됨
- ※ 수도법 시행령 보조 규정과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 규정에 차이가 있음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국가는 75% 이  
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67호)
- 동계의 경우 70% 적용

○ 국가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단체별 부담해야할 정기에  
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 제66조에서는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위  
임함

- 제68조에서는 국가와 광역단체간의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단체 부담경비의 1/2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감염병 예방 및 접종에 관한 법률>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시·도의 보조 비율)에서는 법 제66조에 따른 시·도(특별자치도 제외)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라고 규정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78호)
- 국가예방접종은 서울 30%, 지방 50%로 규정되어 있음

###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 제1항에 보조율을 규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4.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80호~85호)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는 서울 50%, 지방 80%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10%)을 규정함
  - 의료급여는 서울 50%, 지방 80%의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며 차등보조율은 적용되지 않음

###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비용

## 의 부담 등)에 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100분의 70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98호)
  - 장애인연금은 서울 50%, 지방 70%로 규정되어 있음

###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임

#### ○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국고보조 규정하고 기준보조율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 시행령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2호)
  - 119구조장비 확충 50%

#### ○ 지역아동센터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에 국고 보조의 규정이 있으며, 시행령 54조에서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79호)
  -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서울 30%, 지방 50%로 규정됨

#### ○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② - -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89호)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서울 35%, 지방 65%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10%)을 규정함
  - 차등보조율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함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비용의 부담)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비용 부담)에 각각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97호)
    - 서울 50%, 지방 70%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인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1에 규정(115호~117호)
    - 서울 50%, 지방 70%
- 관련 법령에 보조 근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율 규정
  - 재해위험지역 정비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에 보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4호)
      - 재해위험지역 정비 50%

-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 보조)에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5호)
    - 소하천정비 50%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12호)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 50%
- 하수관거 정비 및 BTL임대료 지급,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에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됨
    - 농촌마을하수도 정비는 70%(33호)
    - 하수관로 정비는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112호)
      - ※ 하수처리장 확충은 광역시 50%, 시(읍이상) 50%, 군지역 70%(31번)
- 지방하천정비
  -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9조(국고보조)에 국고 보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44호)
    - 지방하천정비 50%
- 숲가꾸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에 보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50호)
    - 숲가꾸기 50%

- 도시철도 건설
  -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에 보조 근거 규정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46호)
    - 도시철도 건설은 서울 40%, 지방 60%로 규정됨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20조(산림욕장 등의 조성) 산림청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
  -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52호)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50%로 규정
- 체육진흥시설 지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비용 보조를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68호)
    - 체육진흥시설 지원 30%로 규정
-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에 국고보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에 포괄보조금 지원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에 보조율 규정(71호)
    - 서울 30%, 지방 70%-88%로 규정
- 문화재보수정비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보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73호)
    - 국가지정 70%(등록문화재 50%, 전시관 30%)

○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비용 보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됨
  - 어린이집 기능 보장 50%(용지매입비 제외)(92호)
  -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 어린이집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95호)

○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94호)
  - 서울 50%, 지방 80%로 규정

□ 관련 법령에 보조 근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에 해당하는 보조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22호 규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22호 규정은 별표 1에 1호-121호까지 사업별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보조율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

- 보조율 결정 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보조율 : 사업수행의 근거법령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에서 보조율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함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에서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기준보조율에 가산율(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 다만, 보조금의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 1]에 사업과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함(122호 해당)

#### ○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에서 시행령에 위임 규정하고,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에서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 개선

- 작은도서관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

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과학관건립 및 운영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건립 관련 보조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원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영에 대한 보조는 규정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관광진흥 구축

- 관광진흥법 제77조(재정지원)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친환경 축산

- 축산법 제13조(자금지원)에 국가는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일반농산어촌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국가의 보조 규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에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
  -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원예시설현대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

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보조의 규정, 시행령 제3조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라고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생태하천복원사업

-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9조(국고보조)에 국고 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조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보조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 규정 없이 예산사정으로 보조율 결정 규정(122호)

### 3.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규정

- 912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149개 사업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6.3%임
- 20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149개 중 84개(56.4%)는 개별법 혹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호~121호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준 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음
  - 지방비 200억원 이상 149개 국고보조사업 중 65개 사업(43.6%)은 기준 보조율이 법정화되어 있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122호에 해당하는 사업임
  - 지방비 부담이 1000억원 이상의 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운영, 농산어촌

개발,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 지방비부담이 대규모인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의 변동이 발생하면 지방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함

- 특히,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지방비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200억원 부담 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등의 사업은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보조율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 4.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법정화 현황

-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149개 중 기준보조율이 법정화되어 있는 사업은 84개로 56.4%임(<표 3-9> 참조)
  - 84개 사업의 총 지방비 부담 규모는 15.4조원으로 지방비 200억원 이상이 보조사업 19조원의 80.6%임
-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법정화 사업수는 38개 사업 중 23개로 60% 정도이며, 연간 지방비 규모로는 90%정도임(<표 3-10> 참조)
  - 사업수 면에서 법정화율이 80% 이상인 부처는 고용부, 교육부, 산림청,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등임. 사업수가 많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비법정화율이 30%~70% 수준임
  - 지방비 규모면에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은 법정화율이 50% 미만임

&lt;표 3-9&gt;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법정화 현황

지방비 부담	사업 수 (개, %)			예산 규모 (억원, %)		
	법정화	(비율)	비법정화	법정화	(비율)	비법정화
계	84	(56.4)	65	153,521	(80.6)	36,889
5,000억원 이상	6	(100)	-	71,946	(100)	-
1,000억원~5,000억원	27.5	(78.6)	7.5	60,863	(80.5)	14,767
500억원~1,000억원	12	(52.2)	11	8,469	(53.4)	7,391
200억원~500억원	38.5	(45.3)	46.5	12,253	(45.4)	14,732

주: 일부 내역사업의 보조율만 법정화가 되어있는 경우 0.5로 집계(문화재보수정비, 친환경농자재지원)

&lt;표 3-10&gt; 부처별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법정화 현황

(단위: 개수, 억원, %)

	법정화		비법정화		법정화		비법정화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복지부	23	60.5	15	39.5	90,582	89.7	10,351	10.3
국토부	13	54.2	11	45.8	14,081	75.4	4,593	24.6
환경부	13	68.4	6	31.6	15,944	81.5	3,631	18.5
농림부	5	33.3	10	66.7	2,512	21.4	9,244	78.6
문체부	5	45.5	6	54.5	10,375	82.6	2,191	17.4
산업부	2	33.3	4	66.7	1,145	47.6	1,262	52.4
행자부	1	20.0	4	80.0	359	12.5	2,507	87.5
여성부	2	40.0	3	60.0	579	38.4	927	61.6
해수부	2	50.0	2	50.0	939	62.7	559	37.3
고용부	1	100	0	0.0	255	100	0	0
교육부	1	100	0	0.0	338	100	0	0
산림청	9	100	0	0.0	6,202	100	0	0
안전처	5	83.3	1	16.7	8,224	95.1	425	4.9
문화재청	0	0	1	100	0	0	1,327	100
농진청	1	50	1	50.0	500	58.0	367	42.6
식약처	0	0	1	100	0	0	328	100
중기청	1	100	0	0.0	476	100.0	0	0

주: 일부 내역사업의 보조율만 법정화가 되어있는 경우 비법정화로 집계(문화재보수정비, 친환경농자재 지원)

<표 3-11> 20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법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규정 포함) 규정 여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실효 보조율	기준 보조율	<별표 1> 규정여부	
						규정	번호
기초연금지급	10,008,986	7,563,388	2,445,599	76	40~90	기초연금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료 지원	4,554,799	3,047,366	1,507,433	67	서울25~45, 지방55~75	○	89
의료급여경상보조	5,985,016	4,532,692	1,452,324	76	서울50, 지방80	○	85
생계급여	3,373,473	2,698,778	674,695	80	서울40~60, 지방70~90	○	8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77,950	1,101,768	576,182	66	서울25~45, 지방55~75	○	89
보육돌봄서비스	1,035,302	496,945	538,357	48	서울10~30, 지방40~60	○	95
지방하천 정비	1,155,071	675,400	479,671	58	50~60	○	44
하수관거정비	1,317,734	854,799	462,935	65	광역시30, 도청소재지50, 일반시군70	○	112
재해위험지역정비	770,846	385,423	385,423	50	50	○	4
노인일자리 운영	653,298	281,750	371,548	43	서울30, 지방50	×	
일반농산어촌개발	1,207,973	849,564	358,409	70	70	×	
문화시설확충및운영(생활)	471,209	127,837	336,732	27	통합보조율40	○	64
체육진흥시설지원	470,400	141,120	329,280	30	30/70	○	68
국가예방접종실시	556,259	256,843	299,416	46	서울30, 지방 50	○	78
장애인연금	848,896	561,443	287,453	66	서울50, 지방70	○	98
주거급여	1,384,176	1,107,341	276,835	80	서울 40~60, 지방70~90	○	81
하수처리장 확충	563,972	328,464	235,508	58	광역시10, 읍이상 50, 면이하 70	○	31
장애인활동지원	686,310	452,727	233,583	66	서울50, 지방70	○	97
관광자원개발	445,956	222,978	222,978	50	50	○	65
어린이집 지원	400,390	177,636	222,754	44	서울10~30, 지방40~60	○	95
소하천정비(생활)	440,834	220,642	220,192	50	50	○	5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지급	569,941	362,070	207,871	64	광역시30, 도청소재지50, 일반시군74	○	112

세부사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실효 보조율	기준 보조율	<별표 1> 규정여부	
						규정	번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33,465	427,763	205,702	68	서울50, 지방70	○	115
생태하천복원사업	445,763	278,865	166,898	63	50	×	
숲가꾸기	319,448	161,567	157,881	51	50	○	5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05,834	152,917	152,917	50	50	○	12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524,141	371,963	152,178	71	70	○	28
도시침수대응	393,438	242,416	151,022	62	광역시30, 도청소재지50, 일반시군70	○	112
지역아동센터 지원	284,480	136,347	148,133	48	서울30, 지방50	○	79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326,879	180,200	146,679	55	60	○	46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	292,949	146,713	146,236	50	50	○	52
일예시설현대화	372,726	83,668	142,962	22	20-30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315,903	180,680	135,223	57	도로50, 반환기지 평균58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412,703	280,000	132,703	68	국가지정70(등록문화재50, 전시관30)	△	7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54,801	91,315	132,256	26	10-50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85,504	266,034	119,470	69	70	○	33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203,978	84,900	119,078	42	서울40, 지방60	○	46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	266,666	150,000	116,666	56	서울40, 지방60	○	46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 대회 지원	398,747	295,411	103,336	74	도로(동계)50(70), 경기장30	○	6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207,183	104,167	103,016	50	50	×	
노후소방장비 한시적지원	200,000	100,000	100,000	50	국고50, 지방50	○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96,442	98,221	98,221	50	50	×	
노인단체 지원	127,465	32,043	95,422	50	50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생활)	297,270	206,254	91,016	50	서울50, 지방70, 성장촉진지역80	○	99
사방사업	302,687	211,881	90,806	50	70	○	51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77,269	87,291	89,978	50	지방50	○	109

세부사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실효 보조율	기준 보조율	<별표 1> 규정여부	
						규정	번호
우수저류시설설치	176,260	88,130	88,130	50	50	○	114
자활사업	391,822	315,854	75,968	50	서울40~60, 지방70~90	○	82
시도가축방역	171,095	96,899	74,196	50	장비·방역보조 요원 등50, 예방주사70	×	
우아-신설정전철건설	245,107	1,000	67,642	50	정액(국비 12)	○	38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135,009	68,923	66,086	50	50(저녹스버너 정액(60))	×	
하수처리장 확충(민자)	103,358	37,347	66,011	50	광역시10, 읍이상 50, 면이하 70	○	31
장애인일자리지원	129,429	65,474	63,955	50	서울30~80, 지방50~80	×	
3대문화권 생태기반조성	210,714	147,500	63,214	50	70	×	
특수상황지역개발	249,313	186,522	62,791	50	80	×	
산불방지대책	100,978	40,391	60,587	50	40	○	48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190,859	131,311	59,548	50	서울50, 지방70	×	
부산항(지자체)	101,900	5,500	56,800	50	정액	○	39
모자보건사업	100,041	45,530	54,511	50	서울30, 지방50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87,277	32,884	54,393	50	서울30, 광역40, 도서50, 시·군(공동)30(50)	○	26, 27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07,864	53,932	53,932	50	공중보건프로그램100, 인건비 등50	○	42,74
하남선 복선전철	209,682	80,000	51,626	50	서울50, 지방70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63,880	12,776	51,104	50	20(교육청 80)	×	
재정비축진사업지원	165,020	115,000	50,020	50	10~50, 1,000억원 한도 ※ 법은 보조범위와 한도만 규정	도시재정비법 제29조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99,924	49,962	49,962	50	50	○	61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생활)	131,288	77,805	47,622	50	60	○	110
지역투자촉진	1,714억원	1,258억원	457억원	73	45~75	×	
전국체전시설 건립	64,557	19,367	45,190	50	100	○	69

세부사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실효 보조율	기준 보조율	<별표 1> 규정여부	
						규정	번호
도시철도스크린도어설치지원	112,500	67,500	45,000	50	60	×	
아이돌봄지원	122,803	78,716	44,087	50	서울30, 지방70	×	
산림병해충방제	124,220	79,762	43,858	50	약제대금100, 기타50	○	47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81,200	38,670	42,530	50	서울30, 지방50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128,928	86,665	42,263	50	서울20~67, 지방50~70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142,071	51,405	41,224	50	에너지절감20, 목재펠릿30, 지열등60 (지방비20~30, 기타20~50)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80,798	40,399	40,399	50	50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79,294	39,647	39,647	50	50	×	
조림사업	125,163	79,401	39,317	50	장기수70, 큰나무50	○	49
도시재생사업	81,133	42,000	39,133	50	50~60		
가축분뇨처리시설	133,186	41,458	38,990	50	20~50(지방비20~30, 기타20~60)	○	11
노후공단재정비지원	770억원	385억원	385억원	50	50	×	
비점오염저감사업	92,026	53,882	38,144	50	일반50, 관리지역70	○	11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3,725	35,831	37,894	50	30~50%	×	
저상버스도입보조	71,892	34,020	37,872	50	서울40, 지방50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조	
장애아동가족지원	112,536	75,039	37,497	50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심리상담 : 서울50, 지방70 양육지원:서울30, 지방70	×	
택시 감차보상	53,333	16,000	37,333	50	30~70	×	
농업기반정비	186,524	149,219	37,305	50	80	○	6
어업기반정비	185,623	148,498	37,125	50	지방80	○	6
석면관리종합대책	73,920	36,960	36,960	50	50	×	
공공형어린이집	79,872	43,074	36,798	50	서울10~30, 지방40~60	○	95



세부사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실효 보조율	기준 보조율	<별표 1> 규정여부	
						규정	번호
농촌보육여건개선	58,711	29,066	29,645	50	특별수당40~60, 아이돌봄70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93,127	31,410	29,231	50	30~50(지방30~60, 기타10~50)	×	
자전거인프라구축	58,000	29,000	29,000	50	50	×	
부산남부처리장 고도	31,930	3,193	28,737	50	10	○	3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57,354	28,677	28,677	50	50	○	106,107,108
하수처리수재이용	55,486	27,281	28,205	50	광역시30, 도청소재지50, 일반시군70	○	34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40,000	12,000	28,000	50	서울 제외, 지방 30	×	
별내선 복선전철	77,143	50,000	27,143	50	서울50, 지방70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3조	
해안및내륙권발전선도사업지원	53,364	26,682	26,682	50	50	×	
옥동-농소 도로건설 1공구	36,500	10,000	26,500	50	50	×	
로봇랜드 조성사업	52,860	26,430	26,430	50	50	×	
국가급연지원서비스	109,523	83,370	26,153	50	100, 지역사회 중심50	×	
입도시설(국유림제외,생활)	129,057	90,340	25,811	50	70(지방20, 기타10)	○	56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106,985	81,489	25,496	50	75	○	102
재해대책비	50,146	25,073	25,073	50	국가관리100, 지방관리50	재난비용부담규정 [별표1]	
암환자 지원 사업	46,644	21,640	25,004	50	서울30, 지방50	×	
기타 기반시설 지원	68,651	44,122	24,529	50	지방50	○	11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96,787	72,347	24,440	50	서울50, 지방80	○	90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56,071	31,660	24,411	50	국비50~70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74,778	50,581	24,197	50	서울50, 지방70	×	
지역공동체일자리	47,378	23,689	23,689	50	50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4,325	70,680	23,645	50	정액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특)	70,102	46,561	23,541	50	66.7	○	100

세부사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실효 보조율	기준 보조율	<별표 1> 규정여부	
						규정	번호
산성터널(급정축) 도로건설	43,400	20,000	23,400	50	50	×	
지역문화예술지원	47,750	24,530	23,220	50	30:70	×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57,535	23,114	23,114	50	정률(국고40, 지방40)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	61,571	22,633	22,633	50	지방30~50	×	
대중교통지원	119,348	85,009	22,594	50	70~90	○	41
축산물수급관리	55,880	33,568	22,312	50	60:40	×	
농기계임대	44,000	22,000	22,000	50	50	○	14
지역에너지절약	42,916	21,105	21,811	50	서울30, 지방50	×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67,265	45,626	21,639	50	서울50, 지방70	×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연장	53,350	32,000	21,350	50	60	○	46
말산업육성지원	50,400	22,100	21,168	50	20~50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8,401	17,332	21,069	50	서울30, 지방50	○	75
사가정-암사광역도로건설	41,802	20,901	20,901	50	50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천왕-광명 광역도로	40,000	20,000	20,000	50	50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2조	

# 제4장

## 주요 사회복지사업 추진체계 분석

제1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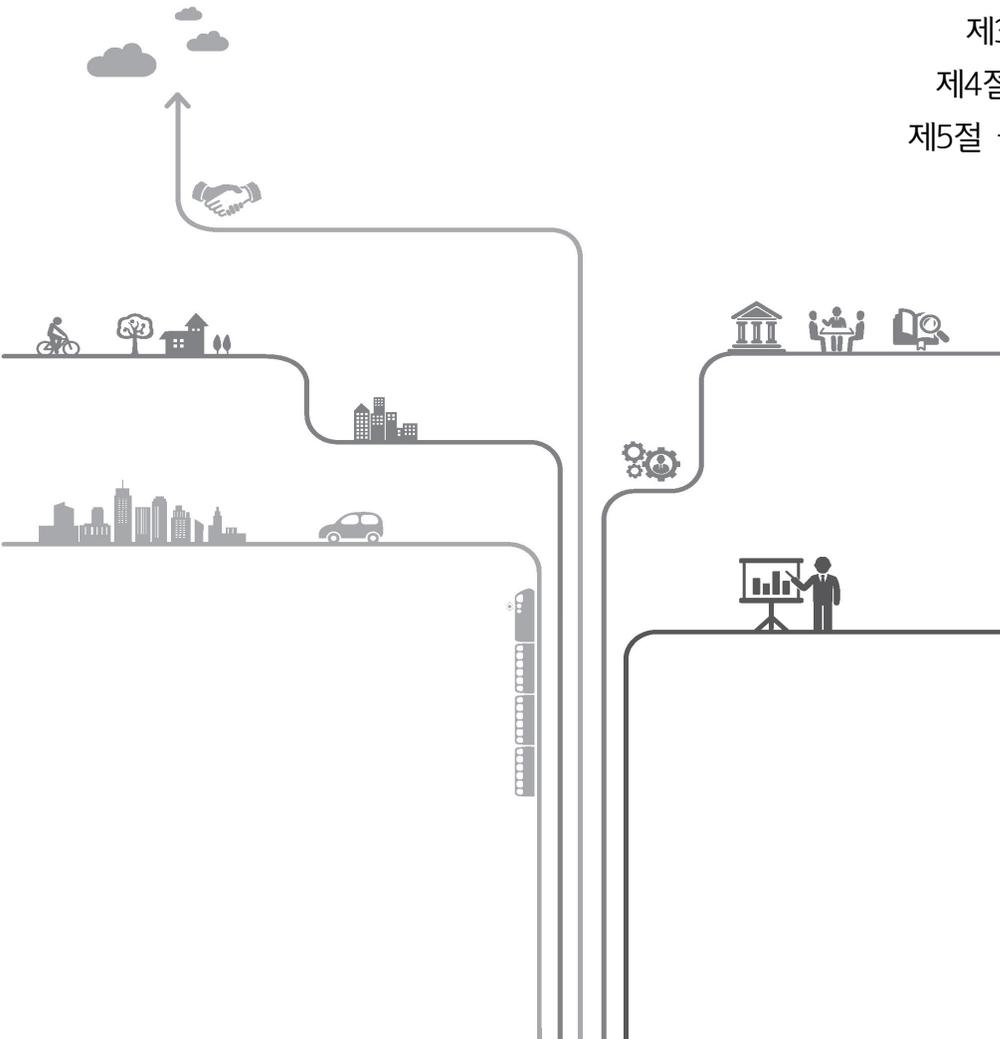
제2절 기초생활보장사업

제3절 기초연금

제4절 장애인연금

제5절 국가예방접종

제6절 종합





## 제4장

## 주요 사회복지사업 추진체계 분석

## 제1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 1. 사업내용 및 중앙·지방 자원부담

## 1)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행
  -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0세~5세까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사업 외에도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등이 있음
  - 2012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0세~2세, 만 5세 영유아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급되고 3세~4세까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음
  - 2013년부터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부담이 증가하였음. 다만, 2015년도부터 만3세~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지방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육료 지출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음

<표 4-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2015년 기준)

구 분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2015년 예산기준 : 810천명)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만0~5세 (2015년 예산 기준 : 919천명)				
정부 지원금	(만원/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일반양육수당 기준>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비고	
	만0세		40.6	37.2		
	만1세		25.7	18.0		
	만2세		29.5	11.8		
	만3세 ~ 만5세		22.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과 차이	
장애아	40.6	37.2		장애아 동일 기준		
지원 방법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기준가격대로 결제하면 사회복지정보원이 시군구에서 받은 자금(국비+지방비)을 카드사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		현금 지급 (아동 또는 부모 계좌에 입금)			

○ 보육료의 유형

-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부모에게 지원(바우처)하며 이용자는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해야 함
-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아동과 장애아동을 보육할 때 1인당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함
- 부모부담보육료: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금액과의 차이를 부모가 부담함. 3~5세 아동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만 부담함

○ 누리과정(만3세~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 복지재정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보육정책 가운데 만3세~5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재원은 2015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함.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보육사업임
- 2012년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

었으며 어린이집에는 24.7%인 5,315억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였음. 이후 교육교부금의 지원 비중이 매년 증대하여 2015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의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복지부-교육부-지방교육청’에서 관련 경비를 충당함

<그림 4-1> 누리과정 교육부담금 부담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교육교부금 합계	유치원	어린이집		
			상위30% 미지급	복지부,지자체 7,747	교육교부금 5,315(24.7%)
2012	23,411	교육교부금 18,096	복지부,지자체 7,747		교육교부금 13,798(64.1%)
2013	31,894		복지부,지자체 4,510		교육교부금 17,035(79.1%)
2014	35,131		교육교부금 21,545(100.0%)		
2015	39,641				

자료: 기획재정부

#### ○ 아동양육수당과 시간차등형 보육료

- 아동양육수당: 가정 양육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함.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현금 지원 됨
- 시간차등형보육료: 양육수당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 등이 정기적 혹은 단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함. 2013년도부터 실시하며 국고보조율은 50%이며 일반적인 보육료지원사업과는 구분됨. 2015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49억원임

<표 4-2> 아동양육수당의 유형별 지원단가

(단위 : 만원)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미만	20.0	20.0	20.0
24개월미만	15.0	17.7	20.0
36개월미만	10.0	15.6	20.0
48개월미만	10.0	12.9	10.0
48개월~취학전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 기타 다양한 유형의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만0세~12세 미취학 장애아):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별도 보육료를 지원함. 취학 연령이지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 방과후보육료(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 보육료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50%씩 부담(서울은 지자체 80%)
- 시간연장보육료: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매일 지원한도액은 60시간임. 시간연장형 혹은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하며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함

2)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업무처리절차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업무처리 절차

- 보건복지부: 보육대상자 기준 및 보육료 단가 결정
- 시군구: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정·관리, 보육료 예탁·정산

- 사회보장정보원: 실질적인 운영기관으로, 시군구로부터 매월 예탁금을 받아 신용카드 방식의 전자바우처로 보육기관에 보육료를 지출함

○ 업무처리절차

- 일반보육료지원: 학부모가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보육료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조사한 이후 지원을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아동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육료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함

<그림 4-2> 보육료 지원 절차

(A) 보육바우처 지원(아이사랑카드)

① 보육료 지원 신청 (학부모→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② 조사·결정·통지 (시군구)	·신청서 접수, 보육료 지원자 결정·통지 -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 등 구비서류 확인
③ 보육료 예탁 (시군구→사회보장정보원)	·전월 25일경 보육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④ 아이사랑카드 결제 (학부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연령 등)를 기초로 자동으로 수납액 생성, 이에 따라 보육료 결제 * 부모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총액 결제
⑤ 보육료 입금 (카드사→어린이집)	·결제후 평균 5일 이내 카드사에서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⑥ 보육료 대금 지급 및 지급내역 통보 (사회보장정보원)	·카드사에 보육료 결제대금(정부지원금) 지급 후 지급내역을 시군구에 통보 * 부모부담금은 카드사에서 부모에게 직접 청구

(B) 아동양육수당 지급

시·군·구 담당과 (자격결정)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
↓	↓
시·군·구 담당과 (결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 급여생성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지원

○ 기준보조율 65%(서울 45%)와 차등보조율

- 보육료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13년까지 50%(서울 20%)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부터 15%p의 보조율을 인상하여 기준보조율은 65%(서울 35%)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10%의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음
- 차등보조율을 포함할 경우 서울은 25~45% 그리고 지방은 55%~75%를 보조받으며 20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실효보조율은 66.8%임.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 복지사업보다 지방재정에 불리한 보조율임

<표 4-3> 주요 영유아보육사업의 사업비 규모 추이와 국고보조율

(단위 : 억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 국고 보조율	연평균 증감률	규모 신장률 (B/A)
	2011 (A)	2012	2013	2014	2015 (B)			
영유아보육료지원 (지방65%, 서울35%)	39,152	48,407	62,169	50,566	45,697	66.8	8.2	1.2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지방65%,서울35%)	1,869	2,138	16,225	18,871	16,780	65.7	143.0	9.0
보육돌봄서비스 (지방40-60%,서울10-30%)	8,131	8,671	9,260	9,731	10,353	48.0	6.2	1.3
아이돌봄지원 (지방70%,서울30%)	625	671	1,087	1,230	1,228	64.1	83.3	2.0
어린이집 관리·지원 (지방40-60%,서울10-30%)	302	1,225	3,195	3,403	4,928	46.0	88.4	16.3
어린이집기능보강 (50%)	293	237	481	143	805	50.0	106.4	2.7
합계	50,371	61,349	92,416	83,944	79,790	62.7	14.6	1.6

주: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에서 국고보조율은 50%

3) 중앙·지방 재원 분담 현황

- 2015년 최종지출액 기준으로 국고보조방식으로 운영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정규모는 8.0조원이며 전체 사업의 실효보조율은 62.7%임. 2011년 대비

2015년 예산 규모는 1.6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6%로 높음

- 2015년도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약간 낮아졌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 하지만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 연도별·사업별 재정규모는 불규칙함

## 2. 사업성격 및 쟁점사항

### 1) 사업성격

- 전국단위에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서 출산률 회복과 여성경제 활동 진흥을 위한 중점 사업임
  - 영유아보육사업이 보육료지원, 보육시설지원, 보육인력양성으로 구분할 때 재원규모에서 보육료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단가, 방식, 시기 등을 모두 국가에서 결정하고, 실제 자금집행도 국가기관(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주민에 안내하고, 국고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액을 포함시켜 국가기관의 요구자금을 송금하는 보조기능이 주된 업무

### 2) 쟁점사항

- 낮은 국고보조율과 재정지출 규모 증가 추세에 따른 재정압박 심화
  - 국가에서 전국 표준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의 국고보조율은 8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기준보조율 65%를 설정하는 것은 사업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낮은 수준임
  - 보육료지원은 영유아동 개인별로 지급되는데, 보육료 단가를 최소 수준

으로 억제해도 매년 물가상승률과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률 등과 같이 자연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대책 없는 일방적 결정
  - 그동안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를 인상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에 참여없이 의무적으로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재원징발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지방간 재정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2008년도에 59.2만명(지방비 0.8조원) 규모였던 보육료지원 사업은 2013년기준으로 225만명(3.5조원)으로 급증하였음. 0세아동 기준으로 보육단가에서도 2000년도 21.9만원에서 2015년도는 40.6만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우려
  - 보육료 부담에 따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갈등이 악화되면서 중앙정부는 2015년도부터 만3세부터 5세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지방교육청의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의미있는 개편을 병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육재정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개편되면서 지방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기획재정부간의 재정갈등이 악화되고 있음
  - 2015년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였지만 2016년도 예산안편성과정에서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간의 재정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육사업 자체의 재원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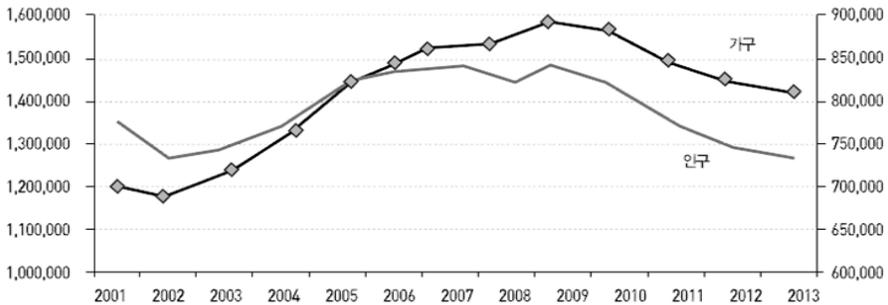
## 제2절 기초생활보장사업

### 1. 사업내용 및 중앙·지방 자원부담

#### 1)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가구단위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보장함.
  - 1961년 극빈층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도입한 생활보호법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음.
  - 행복e음시스템의 도입과 복지부정수급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2010년 이후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의 규모가 지속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4-3>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 2015년도에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2015년도부터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이 개인별 맞춤형급여체제로 전환되면서 수급조건이 개별급여별로 달리 설정되어 수급자 규모와 급여 지원 규모에서 변화가 예상됨

- 예를 들어, 맞춤형급여에 따른 4인가구 생계급여 최고액은 1,182,309원 이고, 구법 생계급여액은 1,052,122원임. 따라서 2015년 7월부터 4인가구는 종전과 비교하여 130,187원/월이 인상되었으며, 2014년 생계급여 대비 15% 인상된 것임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간 업무가 이관되는 등 향후 각 부처에서 구상하는 제도 변화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부담에서도 변화가 예상됨
- 부처별 정책 접근에 따라 수급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하거나 수급대상자 범위를 설계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재원 부담 정도는 가변적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 충족할 경우 급여의 유형별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자의 자격이 결정됨
-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부여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015년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lt;표 4-4&gt; 주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2015)

(단위 : 원/월)

	선정기준	기준액 <sup>1)</sup>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sup>2)</sup> 자활급여 <sup>3)</sup>	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주: 1)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예, 8인가구 : 2,057,218원 = 1,838,491원(7인가구) + 218,727원(7인가구-6인가구))

2) 생계급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

3) 자활급여(자활근로) 대상에는 차상위계층 등 특례대상자들이 다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운영방안)」 안내, 2015

### ○ 기초생활급여별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제외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정됨

&lt;표 4-5&gt;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수준(2015)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 1)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2)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운영방안)」 안내, 2015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위한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함. 지역별·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기준을 달리 적용함. 임대료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함

<표 4-6> 주거급여의 지원내용(2015)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1인가구	19	17	14	13
	2인가구	22	19	15	14
	3인가구	26	23	18	17
	4인가구	30	27	21	19
자가가구 (주택개량)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운영방안)」 안내, 2015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수급권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함

<표 4-7> 교육급여의 지원내용(2015)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52,6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인당 129,5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운영방안)」 안내, 2015

- 자활급여(자활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비롯하여 일반수급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원,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함

&lt;표 4-8&gt; 자활급여(자활근로) 지원 내용

유형별	급여내용	
	참여시간 (주5일)	일일급여 (원/일)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1일 8시간	33,770
인턴형	1일 8시간	33,770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1일 8시간	30,270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21,800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1)」,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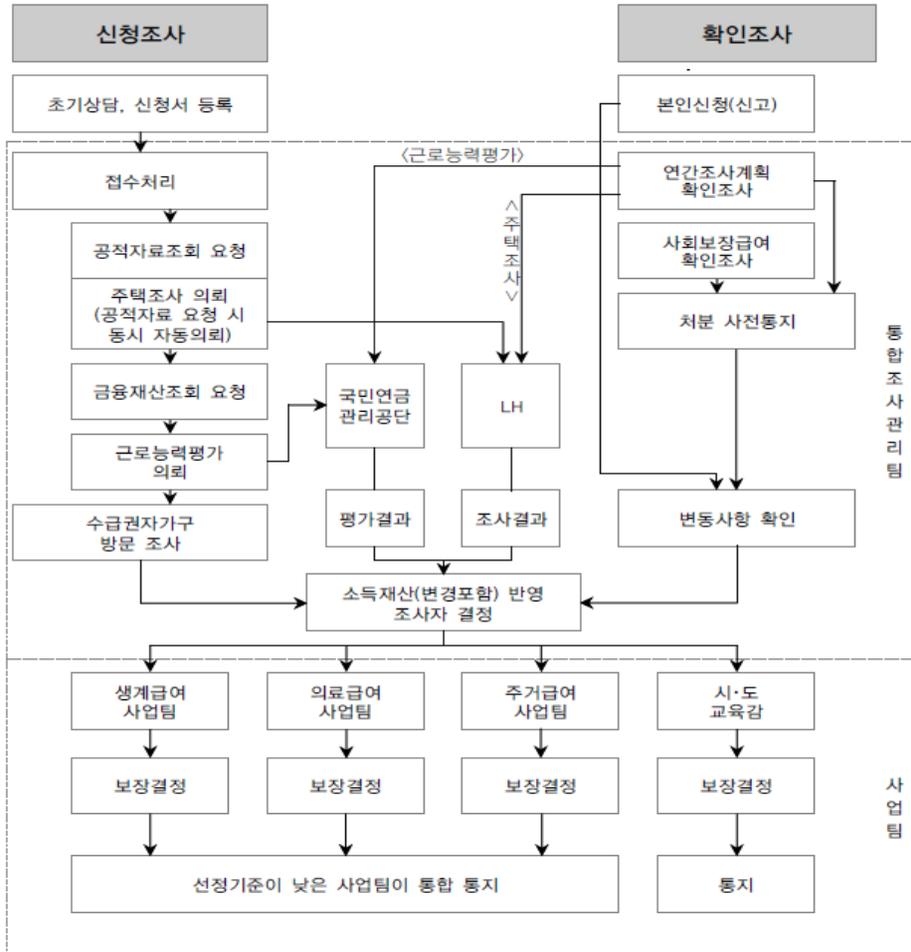
-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인당 60만원(쌍둥이인 경우는 120만원) 지원
-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가구당 75만원 지원

## 2)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업무처리절차

### ○ 현금급여 프로그램: 생계, 의료, 해산, 장제

-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수급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이후 시군구에서 가구별로 수급자격을 부여함
-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유형별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시군구에서는 국비-시도비-시군구비로 구성된 급여를 가구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함

<그림 4-4>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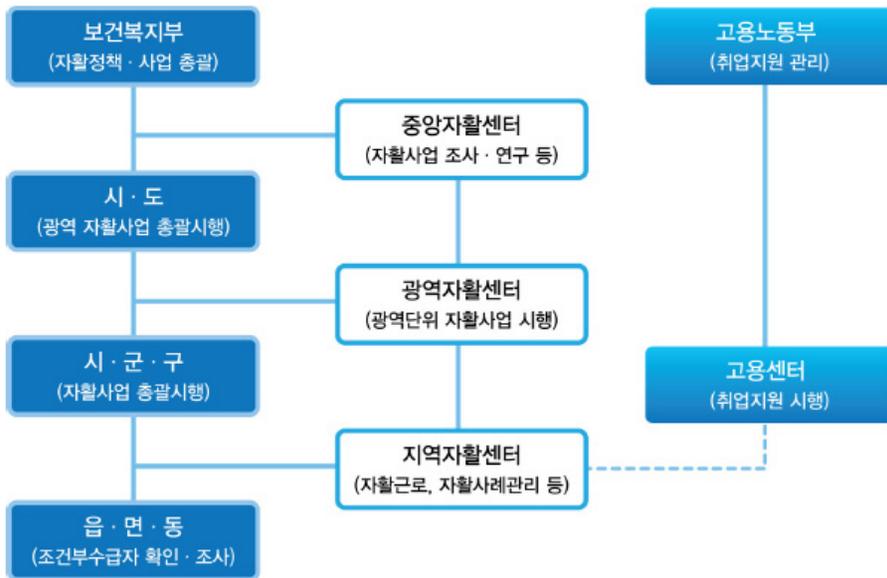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운영방안)」 안내, 2015

○ 현물급여 프로그램 : 주거, 교육, 자활

-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은 시·도교육감으로 교육급여와 관련된 보장결정, 결정통지, 급여지급 등 사업팀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급여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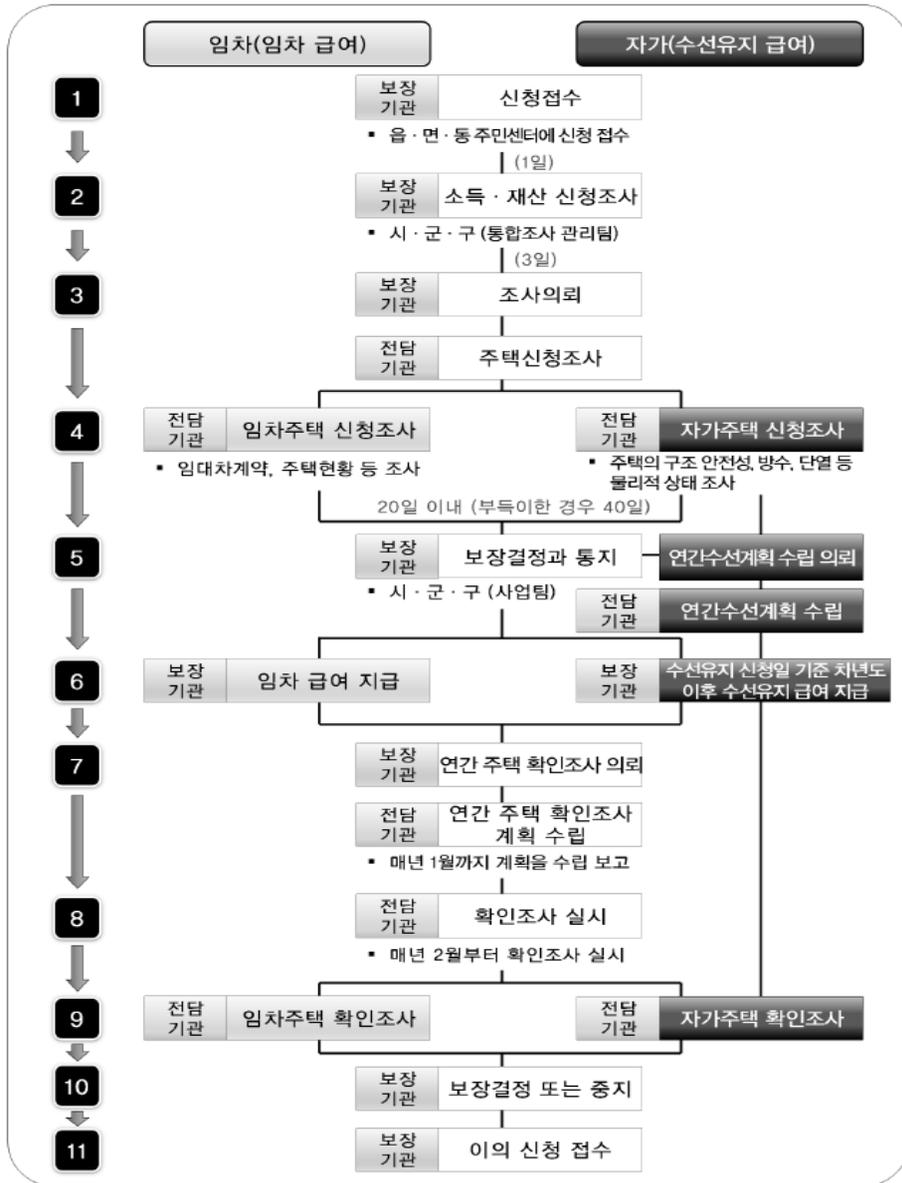
- 주거급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택조사 전담기관에 주택조사를 의뢰함. 전담기관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임차료 적정성 여부, 주택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실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 사업팀에게 전달하고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됨
-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활급여(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신청한 이후 근로능력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자활근로에 참여함.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지원기관들이 있으며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자활협회가 설립·운영됨

<그림 4-5> 자활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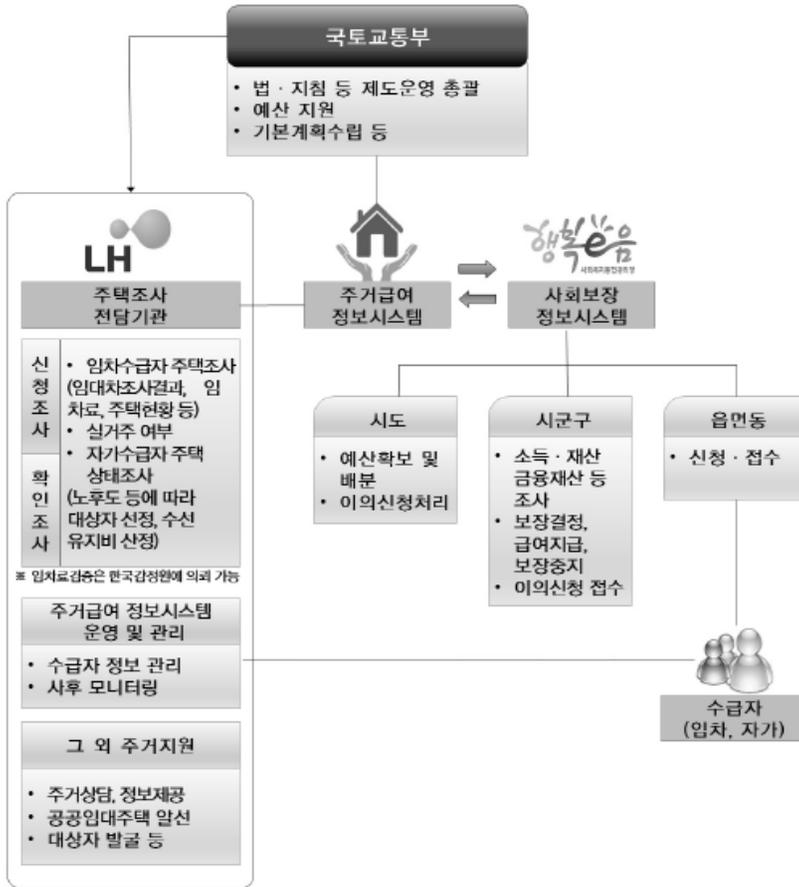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1)」, 2015

<그림 4-6> 주거급여 업무처리절차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사업 안내」, 2015

<그림 4-7> 주거급여 관련 행정체계



자료 : 국토교통부(2015), 「2015년 주거급여사업 안내」.

### 3) 중앙·지방 재원분담 현황

#### ○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중심의 사업운영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보조율은 80%(서울 50%)이며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대해 10% 인상보조율이 적용됨

-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90%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서 7%, 기초자치단체는 3%만 부담함
  - 의료급여는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함
- 최근 5년간 총사업비 안정적 유지, 생계-의료-주거급여 중심 지출
-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1.7조원인데 2011년의 9.7조원과 비교하면 20% 정도만 증대한 수준임. 총사업비의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은 4.7%인데, 주거 급여의 신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11가지의 국고보조사업이 운영되는데 총사업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액의 91.7%를 차지함
  - 의료급여가 6.0조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1.1%로서 가장 많으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총사업비가 많이 증대되었음

<표 4-9>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총사업비 추세와 국고보조율 현황

(단위 : 억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 국고 보조율	최근5년 연평균 증감률	규모 신장률 (B/A)
	2011(A)	2012	2013	2014	2015(B)			
생계급여	30,911	29,735	32,665	31,636	33,735	80.0	1.9	1.1
의료급여	48,358	52,340	57,968	58,509	59,850	75.7	5.5	1.2
주거급여	7,557	6,540	7,345	9,131	13,842	80.0	16.5	1.8
교육급여	1,632	1,708	1,349	1,392	1,691	80.0	3.2	1.0
해산장제급여	194	191	275	266	268	80.0	7.9	1.4
양곡할인	1,047	973	1,081	1,060	969	94.4	-3.3	0.9
긴급복지	781	781	1,250	663	1,343	75.3	23.9	1.7
자활사업	5,333	5,602	5,631	5,189	3,918	80.6	-4.5	0.7
자활센터운영 지원	259	310	442	640	673	67.8	22.4	2.6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 국고 보조율	최근5년 연평균 증감률	규모 신장률 (B/A)
	2011(A)	2012	2013	2014	2015(B)			
자활장려금 (자활소득공제)	264	465	445	307	185	81.3	-0.1	0.7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72	453	541	584	687	80.6	17.0	1.8
합계	96,708	99,097	108,992	109,377	117,159	77.8	4.7	1.2

## 2. 사업성격 및 쟁점사항

### 1) 사업성격

- 국가사회위험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최저수준의 생활안정 전망을 보장하는 의무지출프로그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건강-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임
  - 기존의 임의적인 ‘보호’ 지원에서 저소득층이 최저생계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기초급여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었음
- 중앙정부가 사업 및 재정을 운영하는 의무지출프로그램
  -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역할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의료급여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중앙정부가 상세하게 개별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며 시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수직적인 사업 및 재정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운영에서 지자체의 재량은 매우 적음

### 2) 쟁점사항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지방비 부담의 타당성 쟁점

-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수급권자의 ‘권리’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회안전망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함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서비스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재정사업에 속하고 있으며 장래 연금재원이 고갈되면 예산을 통해 매년 지출해야 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
  - 따라서 일반 국민과 저소득 국민을 구분하여,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분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쟁점이 제기됨
- 중위소득 기준의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재정부담 변화의 불안정성
- 최근 5년동안 총사업비 추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 쟁점은 크지 않음
  - 다만, 매년 중위소득이 결정되는 수준에 따라 개별 급여의 수급자 규모와 가구당 급여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사업비 운영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수급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적어질 수 있음
  - 과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권 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인위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했지만 중위소득 기준은 국민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선 결정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여지는 크지 않음
  - 부정수급관리 강화 등에 따라 수급자의 규모가 증대되지 않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불안정성 쟁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유형별 재정부담 격차와 관리에서 규모경제 미확보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잔여적 복지프로그램임. 주민 구성에서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기초급여의 지출 분담금과 복지행정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불리한 상황이 누적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

-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기초급여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기반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이중의 부담문제가 발생함
  -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재정 및 행정이 운영되면서 동일한 생활권역내에서도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수준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사업운영에서 규모 경제 효과를 확보하지 못하여 비용-효과성이 낮아지는 쟁점이 발생함
- 가구별 맞춤형 급여에 따른 복지행정 부담 지속 증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그리고 가구별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을 관리하는 복지행정업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음
  - 행복e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급자 혹은 수급조건들이 관리되고 있지만 재원구성의 복잡성에 따른 지불정산 업무와 부정수급 관리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행정비용 부담 쟁점이 심화되고 있음

### 제3절 기초연금

#### 1. 사업내용 및 중앙·지방 자원부담

##### 1) 사업내용

-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노인생활안정 사업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제5조(연금액: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에 근거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법정급여
  - 2007년 노인수당으로 출발하여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 전환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의 급여 단

가가 인상되었음.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시행됨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개인별 연금산정 방식

- 부양가족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별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2015년 예산기준 464만명)에 대해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도 연도별로 매년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됨
- 2015년도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
- 5년 단위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초연금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함

○ 2015년 기초연금급여액

- 2015년 1월 ~ 2015년 3월: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원,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원
- 2015년 4월 ~ 2016년 3월: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 2,600원,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 5,760원

2)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업무처리절차

○ 기초연금 신청 및 급여액 결정절차

- 기초연금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연금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정함. 이후 개인별로 산정된 급여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함
- 급여액 결정절차: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급여액’ 결정

○ 기초연금 급여 사업의 담당기관별 업무

담당기관	단계	업무처리내용
읍면동 및 국민연금 공단	제1단계 신청서 작성/상당	-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상담 - 행복e음(지자체),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등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제출서류 스캐닝 입력
	↓	
	제2단계 신청서접수처리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 관리
지자체 통합조사 관리팀	↓	
	제3단계 조사가구유형확정	기초연금 신청자 및 배우자를 확인하여 가구 구성
	↓	
	제4단계 공적자료요청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적자료, 금융정보 등 조회 요청
↓		
제5단계 소득재산조사	신고된 사항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	
↓		
제6단계 선정기준요건확인	소득·재산(선정기준액) 요건 확인 / 직역연금수급요건확인	
지자체 사업과	↓	
	제7단계 수급자결정	수급자 결정(적합/부적합) / 수급가구유형확정
	↓	
	제8단계 기초연금액산정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 A급여액, 부가연금액에 의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제9단계 연금급여액결정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가구형태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 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제10단계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로 통보 -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사후관리(「행복e음」으로 수행) - 매월 25일 연금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2015

### 3) 중앙·지방 분담현황

#### ○ 기초연금의 재원분담 구조

- 2014년과 2015년의 기초연금의 시행으로 전년 대비 재정규모가 각각 61.3%, 46.5% 증가하였음. 기초연금의 기준보조율은 75%이며 나머지 노인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수준임
- 반적인 노인복지보조사업보다는 기준보조율이 높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령인구비율을 고려한 차등보조가 이루어짐.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

#### ○ 최근 5년간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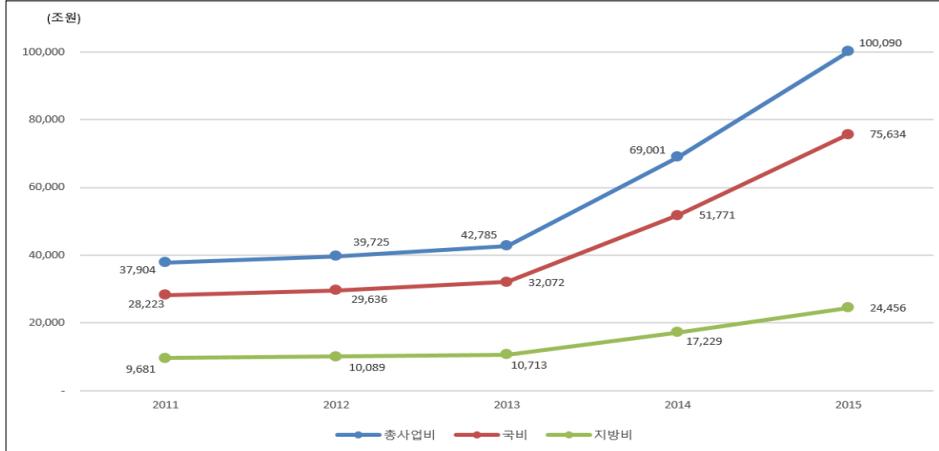
- 20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총사업비는 10.0조원이며 실효보조율은 75.6%임.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24.4%이지만 부담금액은 2.4조원으로 단일 복지사업에서 가장 큰 금액임
- 기초연금 도입 전후로 사업비가 급증하였는데, 2015년도의 총사업비 예산규모는 2011년도의 2.6배 수준이며 연평균 24.2% 증가하였음

<표 4-10> 기초연금 재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율
2011(A)	37,904	28,223	9,681	74.5
2012	39,725	29,636	10,089	74.6
2013	42,785	32,072	10,713	75.0
2014	69,001	51,771	17,229	75.0
2015(B)	100,090	75,634	24,456	75.6
전년대비 평균증감률	24.2	24.9	22.2	
규모증가 B/A	2.6	2.7	2.5	

&lt;그림 4-8&gt; 최근 5년간 기초연금 재정 규모 추이



## 2. 사업성격 및 쟁점사항

### 1) 사업성격

- 고령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보편적 복지사업
  -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수준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정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도입하였음
  - 퇴직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 고령자들의 국민연금 수령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는 안정적인 지급이 필요
- 기초연금법에서 지급대상, 규모, 국고보조율 등 모두 규정
  - 기초연금법에서 연금의 수급자격과 수급규모 그리고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는 의무적 재정지출 사업임
  -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노인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정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사업)의 개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과 세대간 부담 형평성 등의 민감한 갈등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음

- 지자체에 따라 ‘장수수당’ 등의 사업명으로 기초연금 이외 보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던 자체 사업들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2016년도부터 폐지가 권고된 상태임.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사회적 비중과 의미가 더 높아졌음

## 2) 쟁점사항

- 체증적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정부간 재정갈등 악화
  - 기초연금은 기존의 월 1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사업임. 지방재정이 정체 혹은 침체되는 저성장 시기에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조치 없이 단일 복지사업에 대규모의 의무적 재정지출이 법제화되었음
  - 고령사회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며 국민연금의 급여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이중적으로 체증할 것으로 전망됨
  - 사업비 규모 자체가 매우 크며 기준보조율이 75%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상당함.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서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많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 부담의 이중적 체증현상과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이 동시에 발생하여 기초연금 재원을 둘러싼 정부간 재정갈등은 구조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속 악화될 위험이 있음

<표 4-11> 고령인구규모 추계에 따른 기초연금 규모 추계

(단위 : 명, 억원)

	65세이상 노인인구	기초연금대상자	기초연금 규모추계
2015	6,653,943	4,657,760	101,976
2016	6,897,006	4,827,904	107,816
2017	7,156,170	5,009,319	114,104
2018	7,437,375	5,206,163	120,960

	65세이상 노인인구	기초연금대상자	기초연금 규모추계
2019	7,760,744	5,432,521	128,743
2020	8,132,783	5,692,948	137,613
2021	8,537,304	5,976,113	147,345
2022	8,967,669	6,277,368	157,868
2023	9,420,949	6,594,664	169,165
비고	통계청추계인구	노인인구의 70%	(국비 + 지방비)

자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재정수요 변화와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체계 연구」, 2015

-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 타당성 쟁점
  - ‘연금’을 상징하는 국가재정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대상자는 지방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함
  - 지방재정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연금수급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자격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재정지출을 억제하려는 유인을 가짐
  - 따라서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기준보조율 수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쟁점
  - 기초연금의 기준보조율이 75%인 것은 과거 노인수당에서 국고보조율의 관행을 법령에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임. 주요 복지사업에서 서울과 지방의 기준보조율이 차등화되어 있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보조율이 적용됨
  - 당시 노인수당은 임의적인 재량 지출 성격이 강하였으며 잔여적 복지서비스로서 예외적인 보충소득이었음.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노후 소득 보장 of 핵심 재원으로 성격이 변경된 사업특성이 기준보조율 제도에 반영되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비

교하면 기준보조율은 80%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 기초연금의 기준보조율은 ‘기초연금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 기준보조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체계의 예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 법령에 통합하여 기준보조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주요 복지보조사업은 개별 법령으로 분산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전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른 한편으로 노인 소득보장의 사업진흥 관점에서는 개별 법령으로 기준보조율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함. 일본의 국고보조금은 후자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 차등보조율 산정방식의 합리성 쟁점

- 기초연금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을 차등화 산식에서 고려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사회복지비지수를 이용함
- 복지수요를 직접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기초연금방식이 타당할 수 있지만 복지재정부담 정도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차등보조의 원래 취지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특정 사업에서 특정 재정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차등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대표적인 쟁점이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확인됨. 재정자주도가 낮은 부산 북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국적으로 높아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음. 하지만 관할구역내 노인 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2014년 고령화율 11.09%) 기초연금에서는 차등보조 혜택을 받지 못함. 이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사회안전망 사업인 생계급여는 90% 보조율을 적용받지만 기초연금은 70% 보조율의 수준임

&lt;그림 4-9&gt; 복지보조사업별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기초생활보장,보육〉		〈기초연금〉		〈청소년시설확충〉	
		사회복지지비 지수		노인인구비율			
		20% 미만	25% 이상	14%미만	14%이상 20%미만	20%초과	
재정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이상 90%미만	85% 이상	10% 인하	기준 보조율	50	60	70
	80% 미만		기준 보조율	10% 인상	70	80	90

서울 : 30  
지방 : 70~88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자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2

## 제4절 장애인연금

### 1. 사업내용 및 중앙·지방 자원부담

#### 1) 사업내용

##### ○ 사업의 목적과 대상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수준(2015년 예산기준 358천명)에 대해 매월 지급
- 2010년 4월에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한 것임.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

<그림 4-10>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내용



○ 장애인연금의 종류

-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분되며, 부가급여액은 연령에 따라 65세를 기준으로 다시 구분되고 소득수준별로 급여단가를 달리 설정
- 기초급여액의 단가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4년도부터 1인당 20만원으로 설정하고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급여 조정 기준이 매년 4월1일이기 때문에 12개월 가운데 3개월은 전년도 급여단가를 적용하고 9개월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단가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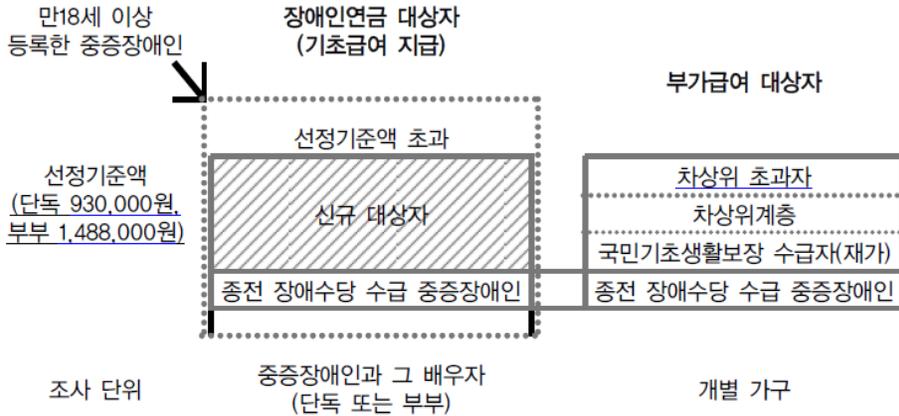
<표 4-1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단가 및 인원

(단위 : 원/월, 명)

소득계층	연령	2015년	2016년 이후(예정)	연금수급자 수 (2015년)
기초수급자 (재가)	18~64세	80,000	110,000	113,251
	65세 이상	280,000	310,000	27,262
시설수급자	18~64세	-	-	-
	65세 이상(특례)	70,000	70,000	5,441
차상위	18세 이상	70,000	100,000	37,341
	65세 이상(특례)	140,000	140,000	36,606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50,000	52,084
	65세 이상	40,000	70,000	66,378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15

&lt;그림 4-11&gt; 장애인연금 급여 유형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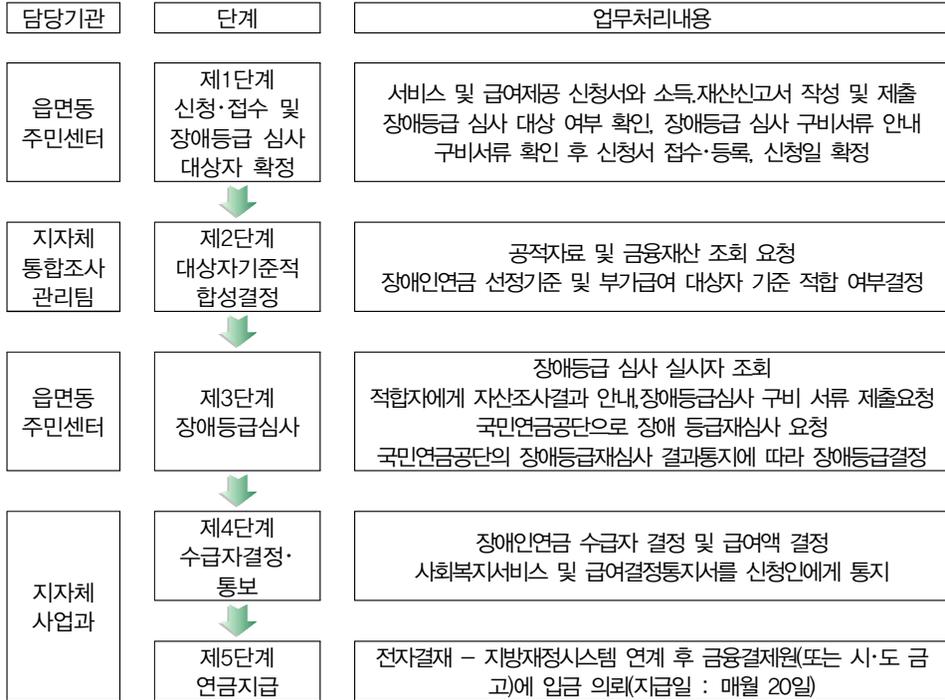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15

## 2)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업무처리절차

- 장애인연금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을 시군구 지자체에서 위탁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기본적인 업무처리절차는 ‘기초연금’과 동일
-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조사팀과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과 장애등급을 확인한 이후 자격을 결정하고, 사업팀에서 개인별로 현금을 계좌입금함

<그림 4-12> 장애인연금업무의 처리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15

### 3) 중앙·지방 분담현황

#### ○ 장애인연금의 재원분담 구조

- 2010년 이전의 장애인수당에서 적용하던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 70%)을 그대로 사용함.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하였으며 인상 및 인하의 차등보조율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명칭이 장애인수당에서 분화되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었지만 정부간 재정관계의 관점에서는 의미있는 변화없이 과거 관례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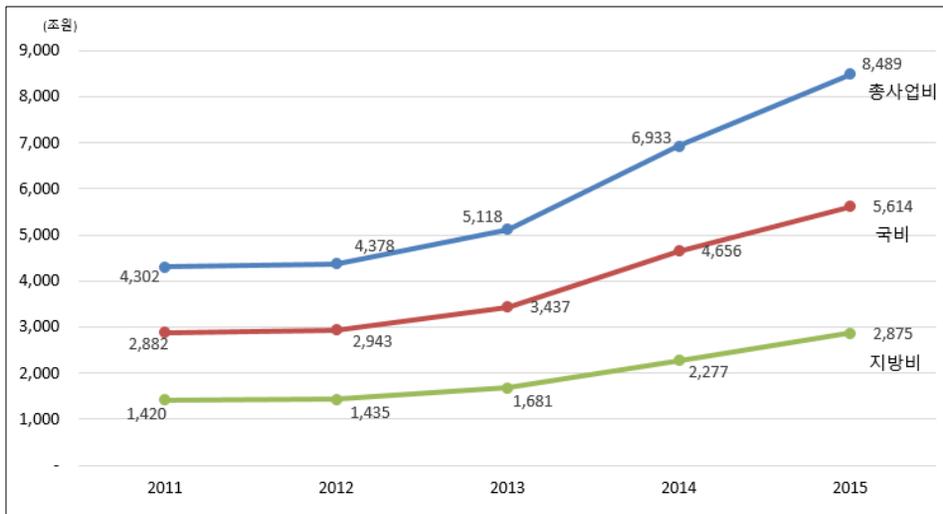
#### ○ 장애인연금 사업의 재정분담 현황

- 2010년도에 장애인수당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

었지만 2012년도까지 재정지출 규모는 약간 증가했음. 하지만 2013년도 부터 급여기준이 상승되고 2014년도에 기초급여가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최근 2년동안 급여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 2015년 기준으로 실효보조율은 66.1%로 낮은 수준인데, 서울특별시의 기준보조율이 50%이고 차등보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보조율은 지방의 기준보조율 70%보다 낮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담 규모 뿐 아니라 지방비도 절대적 규모에서 급상승하였음. 이와 같은 구조는 중앙 정부의 절대적 부담 규모가 더 급상승하였던 기초연금과 대조적임

<그림 4-13> 장애인연금사업의 재정지출 추이



<표 4-13> 장애인연금 재원의 중앙-지방 분담 추이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율
2011(A)	4,302	2,882	1,420	67.0
2012	4,378	2,943	1,435	67.2
2013	5,118	3,437	1,681	67.2
2014	6,933	4,656	2,277	67.2
2015(B)	8,489	5,614	2,875	66.1
전년대비 평균증감률	34.3	34.1	34.7	
규모증가 B/A	2.0	1.9	2.0	

## 2. 사업성격 및 쟁점사항

### 1) 사업성격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사업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한 의무적 지출 사업임.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2010년도에 장애인‘수당’에서 ‘연금’으로 분리하였음
  - 사업 명칭과 입법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동일한 재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 표준적인 사회안전망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보충지원 인정
  -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수준과 보장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표준적으로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 위탁 집행 대행함
  -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충적인 장애수당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애인 소득보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인정됨

## 2) 쟁점사항

## ○ 기준보조율 수준의 적정성 쟁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되며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지출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장애인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분리되었지만 국고보조율은 기존의 임의적 예산사업의 특성이 있는 70% 수준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음. 기준보조율 70%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보다 낮으며 과거의 관행과 유사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차등보조율 미적용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담 가중

- 차등보조율제도가 2008년도부터 주요 복지사업에서 적용되었는데, 당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수당으로 운영되었으며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았음
- 하지만 이후의 재정규모가 급증하고 국고보조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차등보조율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복지재정 부담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이 특히 가중되고 있음
-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복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지방비의 경우,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해서 시도분청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군구는 낮은 비율이 적용됨. 장애인연금의 지방비를 시도분청과 시군구에서 절반씩 분담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지출 규모가 증대될 때 시군구의 복지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제5절 국가예방접종

### 1. 사업내용 및 중앙·지방 자원부담

#### 1) 사업내용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 백신비와 민간병원 예방접종비를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
  - 예방접종 등록 및 안전관리, 연구, 교육훈련·홍보 등 과학적이고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 및 질병퇴치 기반 강화
- 지원대상 예방접종
  - 만12세이하 아동(14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 고위험군 성인 : 노인폐렴구균, 노인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4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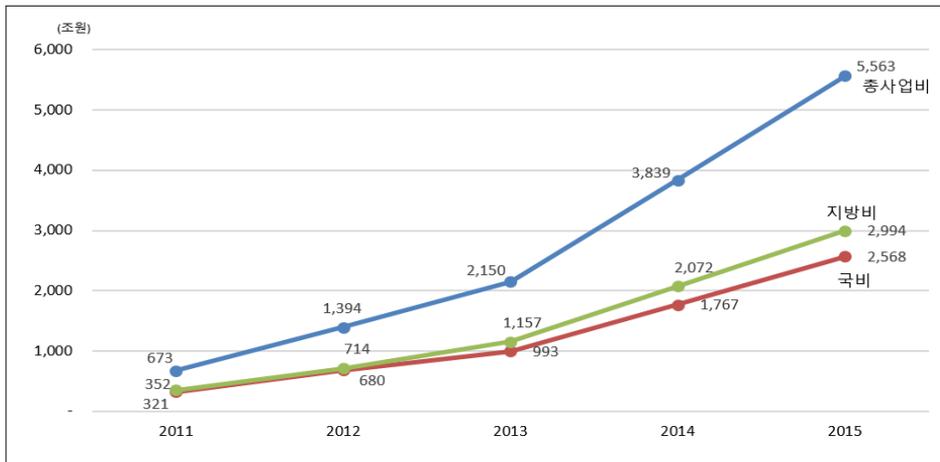
#### 2)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 :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을 접종하거나 보건소와 예방접종 업무 위탁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시스템을 통해 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시군구(보건소)에서 대금을 지급
- 적용대상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위탁민간의료기관 이용 가능. 이후 지자체간 관련 경비를 사후 정산

## 3) 중앙·지방 분담 현황

- 국고보조율 : 지자체 보조(서울 30%, 지방 50%), 직접수행. 서울특별시에 대한 보조율이 30%이기 때문에 전체 실효보조율은 2015년의 경우 46.2%로 낮으며 최근 5년동안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임
- 지방비 부담 비중이 국비보다 더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절대적 규모에서 지방비의 부담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고 있음. 2011년도 총사업비는 673억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8.5배 증가한 5,563억원임. 중앙정부의 국비보다 지방비의 지출 규모가 더 큰 국고보조사업임

&lt;그림 4-14&gt;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출 추이



<표 4-14>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재원구성 추이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율
2011(A)	673	321	352	47.7
2012	1,394	680	714	48.8
2013	2,150	993	1,157	46.2
2014	3,839	1,767	2,072	46.0
2015(B)	5,563	2,568	2,994	46.2
전년대비 평균증감률	54.6	53.2	55.9	
규모증가 B/A	8.3	8.0	8.5	

## 2. 사업성격 및 쟁점사항

### 1) 사업성격

#### ○ 형식적 공동사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무
- 국고보조율이 지방 50%(서울30%)로 설정되어 있어 재정지출 구조에서도 공동사무의 성격이 확인됨

#### ○ 실질적 국가사무

- 사업명칭이 ‘국가’예방접종이며 사업과 관련된 정책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기초적인 보건 안전망에 속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함
-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사업(보건서비스)의 성격, 행정책임, 그리고 재정책임에서 일관성이 매우 취약한 국고보조사업임

## 2) 쟁점사항

- 중앙정부 정책부서의 재정-도덕적 해이 현상 우려
  -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사업이지만, 기준보조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지자체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약함
  - 현재의 사업운영체계와 재정분담 상황을 논리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국고보조율 수준이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과도하게 징발하는 지방공유재 비극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즉,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지방재원을 중심으로 중앙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행정책임과 재정책임이 분리되었음
- 사업 취지 확보 및 예방접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사무로 전환 쟁점
  - 영유아 감염병 예방접종은 전국 표준적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최저수준 보장사업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가 영토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중앙-지방 공동사무로 분류하여 지자체의 지리적 관할구역 중심으로 '주민'에 국한하여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국제적인 다문화의 인구이동과 개방이 보다 확대되고 사업대상자들의 지리적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음
  - 현행 제도에서 국민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종대상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리적 진입장벽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 계속 확대될 경우, 사후비용정산 업무부담과 부정이용 등과 같은 행정관리에서 쟁점이 잠재되어 있음
-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 가중
  - 국가표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보건안전망 사업에서 국비의

비중이 지방비 보다 낮은 수준에서 실효보조율이 운영되는 것은 논리적·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낮은 기준보조율 구조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 최근 예방접종 항목이 대폭추가되고 본인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였음
- 예방접종 항목 증대 : 8종(2009년) → 14종(2015년)
- 본인부담금 감소 : 백신비지원(2011년) → 백신비+접종비(2012년 본인부담금 5천원) → 전면무료(2014년)

## 제6절 종합

- 영유아보육사업: 전국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보조율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대책 없이 국회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 낮은 국고보조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갈등을 초래하였으며, 현재는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간에 재정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국가의 사회위험에 대응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권리로서 법적 성격이 있는 사업
  - 각종 연금, 건강보험서비스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재정사업으로 고갈되면 예산을 통해 매년 지출해야 함. 일반국민과 저소득 국민을 구분하여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인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분담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쟁점이 제기됨
- 기초연금: 고령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연금’을 상징하는 국가재정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임. 대상자는 지방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업임
  -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국가 표준적인 사회안전망 보장사업
  - 사업 명칭과 입법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동일한 재정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임
    - 기초연금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충적인 장애수당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애인 소득보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인정됨. 다만 기준보조율이 서울 50%, 지방 70%인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보다 낮아 합리적이지 못함
- 국가예방접종: 사업 명칭이 국가예방접종이며, 일반 사업과 달리 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적인 보건안정망에 속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함
  -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성격, 행정책임, 재정책임에서 일관성이 매우 취약한 국고보조사업이며, 국고보조율 수준이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과도하게 징발하는 지방공유재 비극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지방재원을 중심으로 중앙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행정책임과 재정책임이 분리되었음







## 제5장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운영체계 개선

## 제1절 국고보조율 법정화 방안

## □ 현행 실태

- 기초연금법과 같이 개별 법령(법률과 시행령), 영유아보육지원 같이 개별법령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시행령)에 위임, 개별 법령에서 보조 근거만 규정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함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의 규정은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별표 1]에 나열적으로 규정하며, 이 경우도 사업별로 보조율을 규정한 경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결정하는 방식임
  - 121개 개별사업은 보조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결정함
  - 보조율의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의 협의로 결정되며, 임의적이기 보다는 과거의 관례, 유사사업의 보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149개 중 기준보조율이 법정화되어 있는 사업은 84개로 56.4%임(앞의 <표 3-9>, <표 3-10>, <표 3-11> 참조)

## □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국고위탁금이라 하며,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국가와 지방간의 자원부담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음
- 국고위탁금은 국가가 100% 재원을 부담하며, 국고부담금은 관련 사업의 개별법률 또는 법령(시행령)에 중앙과 지방간의 자원부담률을 규정하도록 하

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은 보조의 지급을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는 부담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부서의 지침, 편람(요강 등)에 규정하며 임의성이 있음

- 위탁금: 지방재정법 제10조의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경비)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담금: 지방재정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의 규정) 제10조~제10조의 3에 규정된 경비의 종목, 산정기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해야 할 비율은 법률 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보조율의 법령 규정의무는 없으며 매칭조건 등으로 규정함

## □ 장단점

-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법령화 할 경우 지방재정운영의 안정성, 예측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점으로는 국가재정 및 예산사정의 변동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만약 보조율을 변경해야 할 경우 많은 절차적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국고보조율을 모두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정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일본의 예를 보면 국고부담금은 법령에 국고보조율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고보조금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법령보다는 관련 부서의 지침 등(요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에서는 국고부담금의 의무성 보조금 외 국고보조금인 장려적보조금을 많이 정비하여 개혁하였음

#### □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방안

-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일본과 같이 사업마다 위탁금, 부담금, 일반적인 보조금의 형식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 보아 위탁금, 부담금, 일반보조금 3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위탁금 혹은 교부금적 보조금: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 여권발급,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해관계가 있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급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역아동센터지원 등
    -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
  - 일반보조금: 국가가 행정상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의적으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여 지원하는 경우(공모사업 및 신청사업 등)
    - 문화 및 관광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 국가가 일부부담(파급효과, 전국·지역적 사업 여부, 중요도 등 고려)

#### □ 국고보조율 법령화 방안

- 앞서 제시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개별 법령 혹은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이란 앞서 분류한 국고보조사업 중 위탁금·교부금

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과 부담금적 국고보조사업임. 또한 사업의 특성상 연간 지방비 부담이 200억원 이상의 년 중 계속사업이거나 연속적인 사업을 의미함

- 이러한 의무성 사업은 사회보장적 사업, 국가 중요 정책사업, 표준서비스 사업, 국가의무지출 사업으로 개별 법령에 보조율을 규정하고(또는 개별 법령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조율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포함), 이의 보조율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받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일명 ‘임의보조율제’) 보조율도 중앙 각 부처의 사업운영지침 등에 보조율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안정성 및 예측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한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2호에서는 이를 받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신규사업 법령화 방안

- 정부의 정책 혹은 부처의 사업 발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신설되기 마련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설시의 국고보조율 결정은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생략)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생략)

- 만약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용이하지 않다면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대상으로 보조율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생략)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 임의보조율 결정 방안

-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상당 부분을 임의보조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 임의보조율제 채택은 개별 법령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구체적으로 사업명과 보조율이 규정되지 않은 채 매년 예산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현행 122호에 해당)
  -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 사업 149개 사업 중 65개 사업(43.6%)이 임의보조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 현재 임의보조율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위탁금·교부금, 부담금, 일반보조금으로 분류하여 부담금적 성격의 사업은 선별하여 개별법령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화해야 함
  - 일반보조금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을 규정하거나, 중앙 각 부서의 사업운영지침 등에 보조율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를 적용받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주요 복지사업의 보조율 인상 및 형평화 방안

### □ 현행 실태

- 전국 단위에서 국가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낮으며, 보조사업간에 보조율의 격차가 큼

<표 5-1>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사업명	기준보조율	평균보조율
기초생활보장사업	(서울) 50%, (지방) 80%	78%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서울) 35%, (지방) 65%	67%
기초연금	40~90%	76%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66%
국가예방접종	(서울) 30%, (지방) 5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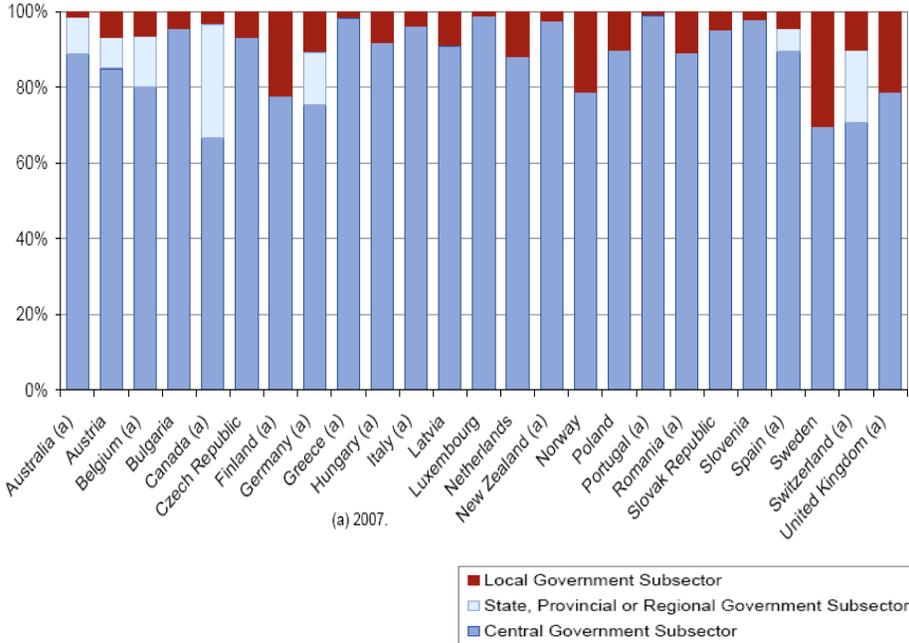
- 2015년 사회복지비 지출의 재원 분담을 보면 국비 56.3%, 시도비 25.7%, 시군구비 18.0%, 기타 0.1%로 나타나고 있음. OECD국가의 정부간 재정분담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많은 편임

### □ OECD 국가의 경향

- 2007년 기준으로 IMF 자료에 의하면,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해당 국가의 총 사회복지지출의 10% 이상을 분담하는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는 10% 이하의 사회복지지출을 담당하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은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이 5%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연방국가인 경우 주정부가 재정부담을 5~10% 정도 하며, 그 중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가 25~30% 정도,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에서 10% 남짓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1>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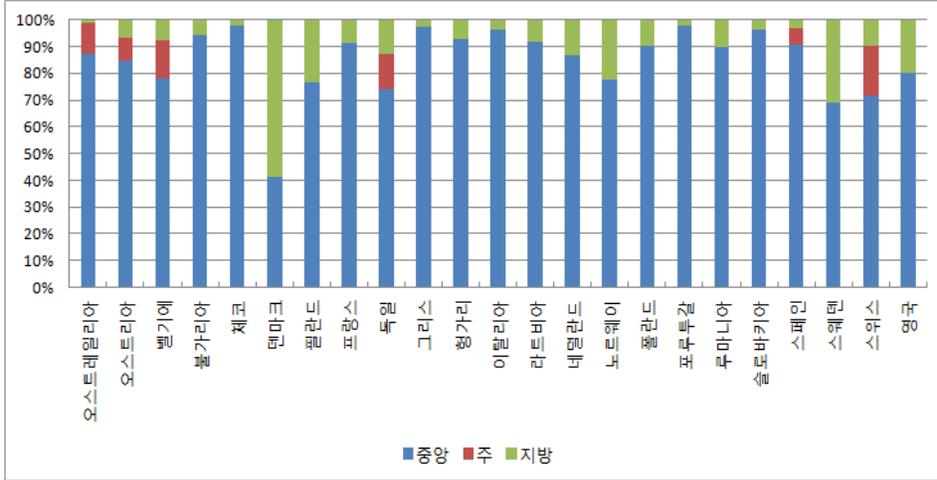


- 주 : 1) 일반정부(공기업 제외) 지출임  
 2) 정부지출은 개인과 가계에 대한 서비스 및 이전을 포함하며 단체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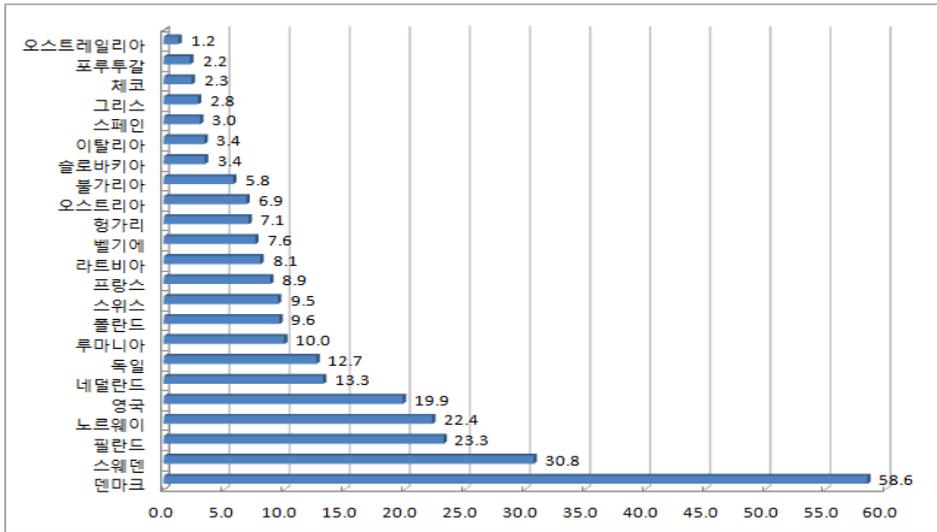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rch 2010; CESifo calculations.

- 2012년 기준으로 IMF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분담은 2007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OECD 국가의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1.2%, 이탈리아 3.4%, 프랑스 8.9%, 독일 12.7%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15%이하임
  - 영국 19.9%, 북유럽 3국 20%~30% 내외이며, 덴마크는 50% 이상임

<그림 5-2>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12년)



<그림 5-3> 국가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12년)



&lt;표 5-2&gt;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12년)

	중앙		주		지방		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오스트레일리아 (Millions of Australian Dollars)	128,081	87.2	16,952	11.5	1,821	1.2	146,854
오스트리아 (Millions of Euros)	57,916	84.7	5,765	8.4	4,717	6.9	68,398
벨기에 (Millions of Euros)	61,087	78.1	11,151	14.3	5,958	7.6	78,196
불가리아 (Millions of Leva)	9,054	94.2	0	0.0	557	5.8	9,611
체코 (Millions of Koruny)	511.93	97.7	0	0.0	12.3	2.3	524.23
덴마크 (Millions of Kroner)	271.45	41.4	0	0.0	383.54	58.6	654.99
핀란드 (Millions of Euros)	37,460	76.7	0	0.0	11,373	23.3	48,833
프랑스 (Millions of Euros)	452.2	91.1	0	0.0	44.1	8.9	496.3
독일 (Millions of Euros)	383.7	74.3	66.9	13.0	65.7	12.7	516.3
그리스 (Millions of Euros)	39,768	97.2	0	0.0	1,166	2.8	40,934
헝가리 (Billions of Forint)	4,674.2	92.9	0	0.0	356.1	7.1	5,030.3
이탈리아 (Millions of Euros)	317.87	96.6	0	0.0	11.18	3.4	329.05
라트비아 (Millions of Lats)	1,580.1	91.9	0	0.0	138.6	8.1	1,718.7
네덜란드 (Millions of Euros)	98,355	86.7	0	0.0	15064	13.3	113,419
노르웨이 (Billions of Kroner)	406.59	77.6	0	0.0	117.08	22.4	523.67
폴란드 (Millions of Zlotys)	245,646	90.4	0	0.0	26,202	9.6	2,71848
포르투갈 (Millions of Euros)	30,308	97.8	0	0.0	690	2.2	30,998
루마니아 (Millions of Lei)	74,264	90.0	0	0.0	8,297	10.0	82,561

	중앙		주		지방		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슬로바키아 (Millions of Euros)	9,752.4	96.6	0	0.0	346.9	3.4	10,099.3
스페인 (Millions of Euros)	165,452	90.6	11,589	6.3	5,527	3.0	182,568
스웨덴 (Billions of Kronor)	542	69.2	0	0.0	241.2	30.8	783.2
스위스 (Millions of Francs)	59,452	71.5	15,813	19.0	7,928	9.5	83,193
영국 (Millions of Pounds)	250,937	80.1	0	0.0	62,406	19.9	313,343

주 : 프랑스 경우 연방정부의 데이터가 기입되지 않아 일반정부(516.3)에서 주 및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감하여 산출하였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데이터가 기입되지 않아 일반정부(496.3)에서 주 및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감하여 산출함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13, 2014

####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연구

○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율을 전액 보조, 높은 보조, 동등 보조의 하나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구인회, 2009:106)

- ① 전액 보조: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전국적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사무, 기초생활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성격을 가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나 한시적 정책사업
- ② 높은 보조: 기초생계급여에 더하여 제공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등), 제도가 성숙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서비스 사업들에 대한 보조(산모·신생도우미 지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 지역편중이나 소수의 시설로 인해 전국적 형평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업(부랑인시설 운영 등)
- ③ 동등 보조: 공동사무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서비스,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수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각종 비현금성 사업들, 비경상적인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기능보강 사업 등

- 위의 기준들에 입각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검토한 결과 현재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동등한 급여보장을 책임져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사무들로서 100% 전액 보조를 제시하고 있음

<표 5-3>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제시(안)

전액 보조	높은 보조	동등 보조
100%	80%-70%	60%-40%
국가사무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전국적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사무, 기초생활급여나 기초생활보장성격을 가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앙정부의 시업사업이나 한시적 정책사업	제도가 성숙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서비스 사업들에 대한 보조, 지역적 편중이나 소수의 시설로 인해 전국적 형평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업	공동사무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 서비스,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수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각종 비현금성 서비스 사업들, 비경상적인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기능보강사업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사업,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지원(희망스타트), 전염병전문가교육과정(전염병관리실무장과정), 감염질환역학조사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할린한인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산모·신생도우지원, 화장장 등 장사시설기능보강(화장로개보수),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부랑인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 및 운영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노인치매그룹홈기능보강, 소규모다기능시설, 입양정보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불임부부지원, 부랑인시설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급성전염병관리, 가정봉사원파견시설기능보강,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자료 : 구인회 외(2009:106)

- 현재 사회복지 사업 중 국고보조율 70% 미만 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50% 대임. 보조율별로 나누어 국고보조사업을 검토해 보면 전국민이 골고루 동

일한 혜택을 받아야 할 사업이나 예산투입 많은 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조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서정섭, 2011)

-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지방적 사무이거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초적인 보장이기 때문에 100%의 국고보조율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할 재배분적 성격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70%~80%이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외국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부문의 국가 재정부담율이 70~80%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함. 또한 Paul Peterson의 ‘도시의 한계(City Limits)’에서 주장하고 검증하여 이론화 된 바와 같이 단체장들은 성장과 경제개발을 우선하고 재배분의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투자함(Paul Peterson, 1981). 이 때문에 재분배적 성격의 사업이나 전국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책임이 지방보다 훨씬 커야 함
- 셋째, 사회기반투자 관련 사회서비스 분야는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의 책임이 따름.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일천하며 아직 지역에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지방의 부담이 클 경우 지역간 사회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거나 지방에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음.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재정부담은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함. 이 분야의 재정책임은 장기적 차원에서는 지방이 많은 분담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어 높은 보조율의 최저 수준이 60% 이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사회복지사업은 SOC 사업과 달라 기준보조율 결정시 고려할 기준 역시 일

반적인 보조사업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결정시 활용할 기준으로는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들 수 있음. 만약 소득 재분배 기능이 주된 목적이라면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은 100%에 근접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고려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은 보조사업은 자율성이 낮은 보조사업에 비해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야 함(배인명, 2013, 2015)

- 공공부조사업의 경우 다른 조건이 없다면 기준보조율은 100%가 되어야 함. 공공부조사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이에 반해 단체위임사무이거나 자치사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있는 사무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낮출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사업보다 낮은 기준보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사회서비스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재설정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5-4> 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적정 기준보조율 제시안

기능적 성격	법적 성격	재량여부	기준보조율
공공부조사업	기관위임사무	없음	100%
		있음	90%
	단체위임사무	없음	90%
		있음	80%
사회서비스사업	기관위임사무	없음	80%
		있음	70%
	단체위임사무	없음	70%
		있음	60% 이하(사업성격에 따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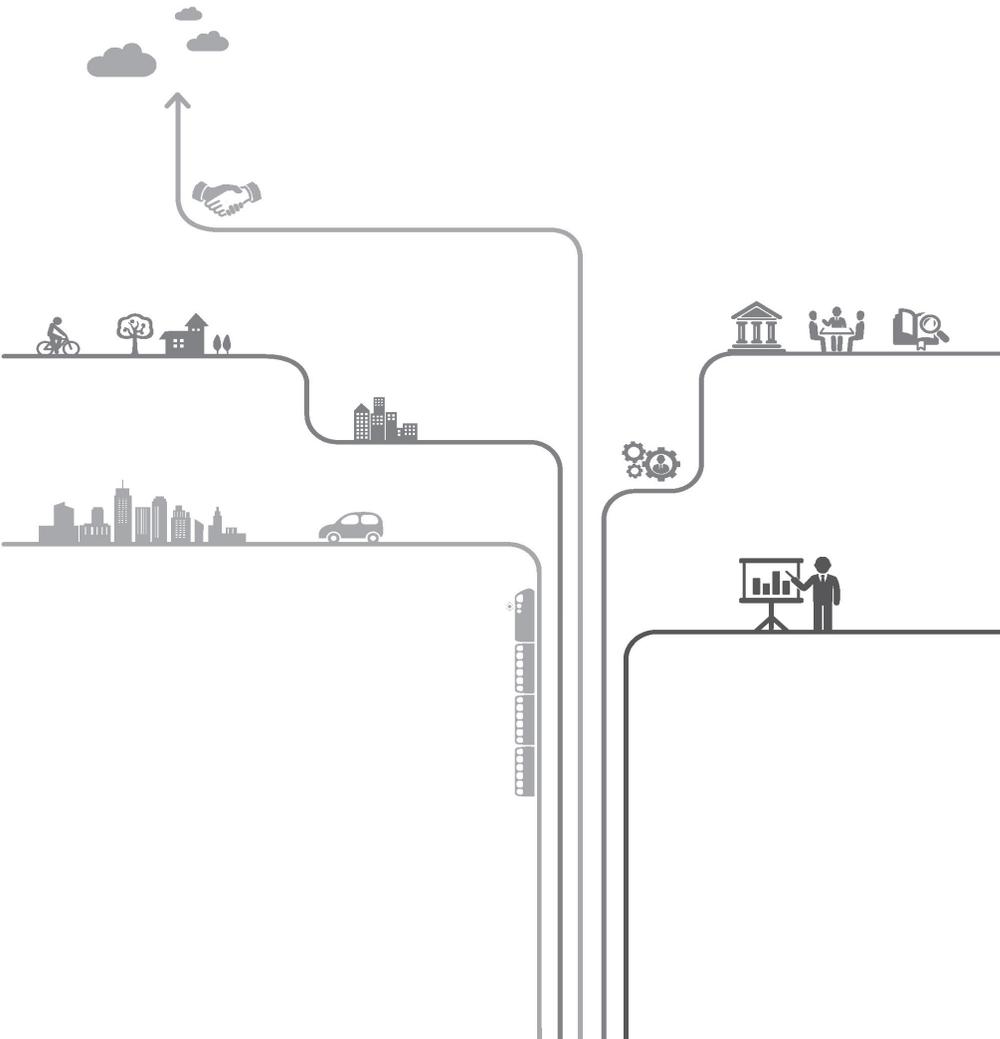
자료: 배인명(2013, 17)

□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인상 및 형평화 필요

- OECD 국가의 사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관련 연구 등을 참고 할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 사회복지 관련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전국적 표준서비스 수준을 요하는 복지사업 등은 100%에 근접한 국고보조율 또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보면 OECD 국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10% 이하가 많으며 북유럽 3국 및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 이하를 부담함
  - 구인회는 국가사무성격이 강하고 전국적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기초생활급여 등의 사업은 국가가 전액부담, 제도가 성숙되지 않고 안정화가 필요한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은 70% 이상의 높은 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 등 비현금성 사업은 60%-40%의 동등보조를 제시함
  - 서정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생존권 보장사업은 국가가 전액보조,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재배분적 성격의 사업은 70% 이상,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지역기반 형성 단계로 60% 이상의 보조를 제시함
  - 배인명은 소득 재배분 목적의 사업은 국가가 전액보조, 기타 공공부조사업은 90% 이상, 사회서비스사업은 70% 이상의 국고보조를 제시함
-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 사업이며,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사업은 현재 국고보조율이 낮은 편으로 100% 근접 혹은 80% 이상의 높은 보조율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주요 사업들이 높은 보조율 이상으로 보조율을 적용하게 되면 보조율의 형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제6장

## 요약 및 정책제언





## 제6장

## 요약 및 정책제언

## 제1절 요약

## □ 연구목적

- 대규모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성격의 국고보조사업간에 보조율의 편차가 커 국고보조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사무 및 국가정책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낮게 책정되어 지방비부담의 문제가 발생함
  - 동일한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간 국고보조율이 낮게 책정되는 동시에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국고보조율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설정 및 보조율 법정화
  - ①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② 기준보조율 규정 여부를 분석하여, ③ 법정화 제시
- 5대 복지사업의 보조율 수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5대 복지사업의 사업성격, 보조율 및 국가·지방 재원분담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검토하여, 보조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 연구내용 요약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재량 여부가 있는지의 사업성격, 전국적·통일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비

부담 규모, 국가의 책무와 관련 되어 있는 사업의 계속성·영속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법령의 규정대로 지방비가 부담 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여부의 재량성을 갖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성이 부여되기에,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대상기준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5조의 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경우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 사업을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정함이 타당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지속적 사업이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과, 지역은 다르지만 영속적인 사업(예, 도시철도나 도로건설 등)을 말함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해관계가 있고,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사업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기초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행정(생활보호, 의무교육, 노인·아동복지·장애인 복지, 보육,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직업능

력개발, 산림병충해 예방 등)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경제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할 법령에서 정한 사무(도로·하천, 해안·항만, 농림수산업 시설, 도시계획사업, 공영주택, 복지시설 건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법령에서 정한 재해 관련 사무(각종 재해 복구 사업 등)
- 2015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의한 연간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 912개 중 149개로 16.3%임
- 연간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총 19조원으로, 전체 지방비 부담 규모인 21.4조원의 89.1%임
- 지방비 200억원 이상인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149개 중 기준보조율이 법정화되어 있는 사업은 84개로 56.4%임
- 84개 사업의 총 지방비 부담 규모는 15.4조원으로 지방비 200억원 이상이 보조사업 19조원의 80.6%임
  - 보건복지부의 경우 법정화 사업수는 38개 사업 중 23개로 60%정도이며, 연간 지방비 규모는 90%정도임
  - 사업수 면에서 법정화율이 80% 이상인 부처는 고용부, 교육부, 산림청,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등임. 사업수가 많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비법정화율이 30%~70% 수준임
  - 지방비 규모면에서 보면 농림수산물식품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은 법정화율이 50% 미만임
- 2015년 사회복지비 지출의 재원 분담을 보면 국비 56.3%, 시도비 25.7%, 시군구비 18.0%, 기타 0.1%로 나타나고 있음. OECD국가의 정부간 재정분담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많은 편임

- 전국 단위로 국가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 간 보조율이 상이함
  - 기준보조율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적, 전국표준서비스 필요(national minimum), 국민의 생존권적 성격을 갖는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낮음과 동시에 사업 간 보조율의 격차가 큼
  -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인 영유아보육 사업, 국가의 책무인 예방접종을 보면 기준보조율이 낮으며 국고보조율의 격차가 큼
- 법령상 국고보조율의 규정은 ① 개별 법령 규정, ② 개별 법령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동시 규정, ③ 개별 법령 시행령에서 보조율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따른다는 규정, ④ 개별 법령에는 보조근거만 있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 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122호(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에 해당 등임

□ 사회복지 5대 사업의 사업성격과 쟁점

- 영유아보육사업: 전국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보조율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대책 없이 국회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 낮은 국고보조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기초생활보장: 국가의 사회위험에 대응한 기초적인 사회안전 프로그램,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권리로서 법적 성격이 있는 사업
  -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인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분담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쟁점이 제기됨
- 기초연금: 고령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연금’을 상징하는 국가재정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임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국가 표준적인 사회안전망 보장사업
  - 사업 명칭과 입법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동일한 재정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임
- 국가예방접종: 사업 명칭이 국가예방접종이며, 일반 사업과 달리 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적인 보건안전망에 속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함
  -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성격, 행정책임, 재정책임에서 일관성이 매우 취약한 국고보조사업이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중앙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지방재원을 중심으로 중앙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행정책임과 재정책임이 분리되었음

## 제2절 정책제언

### 1. 국고보조를 법정화 방안

-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방안
  -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 보아 위탁금·교부금, 부담금, 일반보조금의 3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위탁금 혹은 교부금적 보조금: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여권발급,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이해관계가 있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기초생활보장 급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역아동센터지원 등)
  -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
- 일반보조금: 국가가 행정상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의적으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여 지원하는 경우(문화 및 관광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공모사업 및 신청사업)
  - 국가가 일부부담(파급효과, 전국·지역적 사업 여부, 중요도 등 고려)

#### □ 국고보조율 법령화 방안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개별 법령 혹은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 연간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선별하여 개별 법령 혹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사업별로 보조율을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122호의(일명 ‘임의보조율제’) 보조율도 중앙 각 부처의 사업운영지침 등에 보조율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운영하는데 안정성 및 예측성을 갖도록해야 함

#### □ 신규사업 법령화 방안

- 정부의 정책 혹은 부처의 사업 발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신설되기 마련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설시의 국고보조율 결정은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함
  - 만약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용이하지 않다면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

가를 하고, 이를 대상으로 보조율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함

#### □ 임의보조율 결정 방안

- 현재 임의보조율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위탁금·교부금, 부담금, 일반보조금으로 분류하여 부담금적 성격의 사업은 선별하여 보조율을 법령화해야 함
  - 일반보조금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조율을 규정하거나, 중앙 각 부서의 사업운영지침 등에 보조율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를 적용 받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복지사업의 보조율 인상 및 형평화 필요

- OECD 국가의 사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관련 연구 등을 참고 할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 사회복지 관련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전국적 표준서비스 수준을 요하는 복지사업 등은 100%에 근접한 국고보조율 또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 사업이며,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사업은 현재 국고보조율이 낮은 편으로 100% 혹은 높은 보조율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100% 근접 국고보조율, 높은 보조율 적용을 고려해야 함
- 사회복지 주요 사업들이 높은 보조율 이상으로 보조율을 적용하게 되면 보조율의 형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곽채기,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3호, 2009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재정수요 변화와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체계 연구』, 2015
- 구인회,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경기도 사례연구』, 2009
-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사업 안내』, 2015
- 김성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7
- 김현아,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대한민국,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4
- 박인화,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재정지출동향분석』, 제3호, 국회예산정책처, 2008
-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운영방안) 안내』, 2015
- 보건복지부,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 I )』, 2015
- 보건복지부,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2015
-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15
- 서정섭, “자치구 영유아 보육비 재정부담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발표 자료집, 2013
- 서정섭 외, 『국고보조사업 종합 진단체계 구축 및 시스템 개선방안』,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1-04(제454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손희준, 지방재정의 경직성 분석, 미발표 논문
- 유 훈, 『재무행정론』, 6정판, 법문사, 2003
- 이원희 외, 『지방자율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조정방안』, 한국지방재정학

- 회, 2013
-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여건과 정부간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체계 개선』, 2011년 지방재정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단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향』,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여건과 정부간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체계 개선』, 2011년 지방재정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 임성일·서정섭,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 임성일 외,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역발전위원회, 2012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 합리적 역할 배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사무구분 연구』, 2014
- 조임곤,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제2호(제12권), 2009
- 최병호 외,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개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 최성은,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향후 5년간 사회복지장분야의 기본방향과 핵심사업 발굴』, 2014
-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예산현안분석 제35호, 2010.9
- 배인명, “복지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에 관한 연구”, 『현대 사회와 행정』, 제23권 제3호, 2013
- 최성은·신혜란·한창완·강지원·이기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최병호·김의섭·유태현·이재원·정종필,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부담체

계 개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Axelrod, Donald(1988), *Budgeting for Modern Government*, N. Y.: St. Martin's Press.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ESifo calculations, March 2010.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13*, 2014

Paul E. Peterson, *City limi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2015.11.14.)

Robert D. Ebel & Serdar Yilmaz,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Finaneial Management*, World Bank, 1999

Weidenbaum, Murray L., "Budget 'uncontrollability' as an obstacle to improving the allocation of Government resources". in Golembiewsky & Rabin (eds.),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2ed, F. E. Peacock Publishers, 1979.

Wildavsky, Aaron(1992), *The New Politics of Budgetary Process*, 2rd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 <부록 1> 일본의 국고보조금제도

### ○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 ‘국고지출금’(지방재정법)

#### 국고지출금(國庫支出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만 하는 사무사업 중 주로

- ① 국가사무적 성격을 가진 것,
- ② 국가의 시책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출하는 것,
- ③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

### 1. 일본의 보조금 관련 법령

- 국가의 보조금 절차는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보조금적정화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

#### 1) 보조금적정화법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55년부터 시행)

#### ※ 제1조(이 법의 목적)

- 이 법은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등의 교부에 부정한 신청 및 보조금 등의 부정한 사용방지, 기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 및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에 대한 적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2) 지방재정법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의 특정재원을 총칭하여 ‘국고지출금’이라고 부르며, 지방재정법은 이를 국고부담금(제10조~제10조

의3), 국고보조금(제16조), 국고위탁금(제10조의4)으로 분류 한 후에 국가의 사무, 지출금액의 산정에 관한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규칙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32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출에 대해서는 ‘보조금적정화법’의 규정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요강 등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다른 곳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등이 존재하고 있는 이에 대한 조성금액은 시설이나 건물, 토지 등의 구입금액의 몇 %로 정해지고, 신청내용을 평가한 후 인가가 나면 지급된다. 평가는 발주에서 납품, 청구서를 바탕으로 한 지불, 영수증까지 일련의 구입과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물 확인까지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실시

## 2. 지방재정법(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

### 1)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지방재정법 제10조~제10조의3)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실시해야만 하는 사무사업 중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부담 구분에 근거해 국가가 지출하는 경비(국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경비성격의 보조금)
- 예) 의무교육 교원급여 부담금, 생활보호 관련 부담금, 공공건설사업 부담금, 재해복구 부담금 등
- 국고부담금의 3가지 유형  
: 일반행정 국고부담금, 공공사업 국고부담금, 재해복구 국고부담금

- － 국고부담금의 중앙과 지방 간 부담 비율: 법률 및 시행령으로 규정  
 ※ 일본 지방재정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의 규정) 제10조~제10조의 3에 규정된 경비의 종류, 산정기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해야 할 비율은 법률 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일반행정비 국고부담금(지방재정법 제10조)

○ 예) 의무교육 교원급여 국고부담금, 생활보호 국고부담금, 공공사업 국고부담금, 재해복구 국고부담금

※ 일본 지방재정법 제10조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령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만 하는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중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또한 국가가 진행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의무교육 직원의 급여(퇴직수당,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여비 등 제외)에 필요 경비
2. 삭제
3. 의무교육 모든 학교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경비
4. 생활보호에 필요한 경비
5.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경비
6. 임신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필요한 경비
7.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필요한 경비
8. 마약, 대마, 아편의 만성 중독자의 의료에 필요한 경비
9. 신체장애인의 갱생 원호에 필요한 경비
10. 부인상담소에 필요한 경비
11. 지적장애인의 원호에 필요한 경비
12. 후기고령자의료 요양 급부 및 입원시 식사요양비, 입원시 생활요양비, 보험 외 적용 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 요양비, 특별요양비, 이송비, 고액요양비, 고액개호 합산 요양비 지급,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에 필요한 경비
13. 개호보험의 개호급부, 예방급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에 필요한 경비

14. 아동일시보호소, 미숙아, 소아만성특정질환아동 등 신체장애아 및 결핵아동의 보호, 아동복지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 및 유보제휴형 인정 어린이집을 제외) 및 양부모에 필요한 경비
15. 아동수당에 필요한 경비
1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입원시 식사요양비, 입원시 생활요양비, 보험의 적용 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 요양비, 특별요양비, 이송비, 고액요양비, 고액개호 합산요양비 지급, 전기고령자 납부금 및 후기고령자 지원금 및 개호 납부금의 납부 및 특정건강진단 및 특정보건지도에 필요한 경비
17.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개호수당 지급 및 개호수당에 관련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18. 중증장애아에 대한 장애아복지수당 및 특별장애인에 대한 특별장애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19. 아동부양수당에 필요한 경비
20. 직업능력개발학교 및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
21.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22. 민유림의 산림계획, 보안림 정비, 기타 산림의 보호 배양에 필요한 경비
2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에 필요한 경비
24. 국토교통성 장관이 정하는 특정계획 또는 국토조사사업 10개년 계획에 근거한 지적조사에 필요한 경비
25. 특별지원학교 취학장려에 필요한 경비
26. 공영주택의 임대료의 저렴화에 필요한 경비
27. 소방청장의 지시에 따라 출동 한 긴급 소방원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28. 무력공격사태 등의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 및 긴급대처 사태에 따른 긴급대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 이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실비변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경비,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 및 긴급대처 보호조치 훈련에 필요한 경비
29.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30. 신종플루 등 긴급사태 발생시 임시 의료시설의 의료제공 및 매장 및 화장에

필요한 경비, 신종플루 등 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실비변상 또는 손해 보상에 필요한 경비

31. 지역의 의료 및 간호의 종합적인 보장 촉진에 관한 기금으로 저입에 필요한 경비
32. 지정난치병에 관한 특정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경비
33.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급부에 필요한 경비(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제외)
34. 생활근공자 자립상담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생활근공자 주거보장 급부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 ② 건설사업비 국고부담금(지방재정법 제10조의 2)

○ 공공사업(도로, 하천, 사방, 해안, 항만, 공항, 산림도, 공영주택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정치가에 의한 지역구의 이익유도 수단으로 활용

※ 지방재정법 제10조의 2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경제에 적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도로, 하천, 사방, 해안, 항만 등에 관한 중요한 토목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필요한 경비
2. 임지, 용담, 어항 등에 관한 중요한 농림수산업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필요한 경비
- 2의 2. 토사방지 공사 및 산사태 붕괴 방지 공사에 필요한 경비
3.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공영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5. 아동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6. 토지개량 및 개척에 필요한 경비

③ 재해복구 국고부담금(지방재정법 제10조의 3)

- 각종 재해에 대한 복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를 부담
  - ※ 지방재정법 제10조의 3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하는 재해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해에 관한 사무에서 지방세법 또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그 재정수요에 적합한 재원을 조달하기 곤란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1. 재해구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재해조위금 및 재해장애 위문금에 필요한 경비
    3. 도로, 하천, 사방, 해안, 항만 등에 관한 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임지황폐방지시설, 임도, 어항 등에 관한 농림수산업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5.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시설의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6. 공영주택의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7. 학교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8.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의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9. 토지개량 및 개척에 의한 시설 또는 경지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2)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지방재정법 제16조)

- 국가가 특정사무 사업의 실시를 장려하거나 조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장려적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 (재정원조적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되고, 국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지출이라는 점에서 국고부담금 또는 국고위탁금과 구별.
- 중앙부처별 시책추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
  - 예) 지방(도도부현)경찰비 보조금,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 ※ 지방재정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3) 국고위탁금(國庫委託金)(지방재정법 제10조의 4)

- 본래 국가사무이며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그 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지출하는 것
  - 예) 국회의원선거비, 통계조사비, 검역비 등
    - ※ 지방재정법 제10조의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경비)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부담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국회의원 선거, 대법원판사 국민심사, 국민투표에 필요한 경비
      2. 국가가 자체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하는 통계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3. 검역에 필요한 경비
      4. 의약품의 검정에 필요한 경비
      5. 아편 단속에 필요한 경비 (제10조 제8호에 관한 것은 제외)
      6. 국민연금, 고용보험, 특별아동부양수당에 필요한 경비
      7. 토지의 농업 상 이용 관련 조정에 필요한 경비
      8. 미귀환 일본인의 조사에 필요한 경비

### 3. 보조금적정화법

- 보조금적정화법은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결정 관련 사항, 그 외 보조금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 교부의 부정신청 및 보조금의 부정사용 방지, 그 외 보조금 관련 예산집행 및 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할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결정, 제3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2조에서는 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보조금,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분담금 제외), 이자보급금(利子補給金),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한 반대급부 없는 급부금이 제시되고 있음

제1장 총칙 (第一條—第四條)  
 제2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결정  
 제3장 보조사업의 수행 등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등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

- 동법에서는 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1) 보조금, 2) 부담금, 3) 이자보급금, 4) 그 외 상당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 정령에서 규정된 급부금은 2015년 12월 현재 175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됨

<보조금적정화법법 시행령 제2조>

(보조금으로 하는 급부금의 지정)

제2조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부금으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6조의4의3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2. 농업재해보상법(農業災害補償法) 제15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
3. 농업개량조장법(農業改良助長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
4. 어업법(漁業法) 제108조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
5. 전파법(電波法) 제71조의3제9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6. 식물방역법(植物防疫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
7.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 제7조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
8. 농업위원회에 관한 법률(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9.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库負担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10. 삼림법(森林法) 제19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11. 이도진흥법(離島振興法) 제7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12. 특별지원학교에의 취학장려에 관한 법률(特別支援學校への就学奨励に関する法律)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13. 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奄美群島振興開発特別措置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14. 의무교육제학교의 시설비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義務教育諸学校等の施設費の国庫負担等に関する法律)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15. 국민건강보험법(国民健康保険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조정교부금
16. 激甚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구조에 관한 법률(激甚災害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等に関する法律)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17. 어선손해배상법의 일부를 개정 법률(漁船損害補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부칙 제5항, 어선손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漁船損害補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부칙 제3항 및 어선손해배상법의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교부금
18. 석탄광업의 구조조정추진의 석탄대책의 종합적 실시를 위한 관계법률의 조정에 관한 법률(石炭鉱業の構造調整の推進等の石炭対策の総合的な実施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지녔다는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석탄광업재건정비임시조치법(石炭鉱業再建整備臨時措置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19. 직업능력개발촉진법(職業能力開発促進法) 제95조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
20. 공해건강피해에 관한 법률(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제50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
21.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発電用施設周辺地域整備法) 제7조에 규정하는 교부금
22.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防衛施設周辺の生活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조정교부금(特定防衛施設周辺整備調整交付金)
23.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제9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4. 항만노동법(港湾労働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5.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혹은 가족개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育児休業 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6.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법률(介護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제23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
27.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법률(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8.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
29.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 제122조제1항 및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한 교부금
30.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沖縄振興特別措置法) 제105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교부금
31.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 제4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교부금
32. 독립행정법인수자원기구법(独立行政法人水資源機構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33.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次世代育成支援対策推進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
34. 지역재생법(地域再生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
35.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공적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36.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石綿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法律)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 중, 동법 규정에 따른 독립행정법인 환경재생보전기구가 실시하는 사무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 관련된 것
37. 도주제특별구역에서 광역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道州制特別区域における広域行政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
38.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 및 지역간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39.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広域的な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40. 주유군의 재편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駐留軍等の再編の円滑な実施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6조에 규정된 재편교부금
41. 삼림의 간벌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42. 고등학교 취학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43. 2011년도에 있어 어린이 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平成二十三年度における子ども手当の支給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23조에 규정된 교부금
44. 동일본대진재부흥특별구역법(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45. 특정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급부금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定B型肝炎ウイルス感染者給付金等の支給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38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

46.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福島復興再生特別措置法) 제36조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47. 어린이 육아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 제68조제2항에 규정된 교부금
48. 불발탄등처리교부금(不発弾等処理交付金)
49. 계발선전사업위탁비(啓発宣伝事業等委託費)
50.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비교부금(特別支援教育就学奨励費交付金) (제11호에서 열거하는 급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51. 사회사업 학교경영위탁비(社会事業学校等経営委託費)
52. 생활보호지도 감독위탁비(生活保護指導監査委託費)
53. 신체장애자 복지촉진사업위탁비(身体障害者福祉促進事業委託費)
54. 위생관계지도자 양성위탁비(衛生関係指導者養成等委託費) (의료위생관계지도자양성위탁 중, 구급의료시설의사연수회 위탁 관련은 제외)
55. 유족 및 부재가족 원호사무위탁비 중 전장병자 복지사업조성위탁 및 쇼와관운영위탁 관련(遺族及留守家族等援護事務委託費のうち戦傷病者福祉事業助成委託及び昭和館運営委託に係るもの)
56. 산간지역 간접지불교부금(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交付金)
57. 수산업 개량보급사업교부금(水産業改良普及事業交付金)
58. 후진지역특별법 적용단체 등 보조율 차액 및 후진지역 특례법 적용단체보조율 차액(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等補助率差額及び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59. 석유저장시설 입지대책 등 교부금(石油貯蔵施設立地対策等交付金)
60. 유엔/장애자의 10년 기념시설운영위탁비(国連・障害者の十年記念施設運営委託費)
61. 전원입지 추진대책교부금(電源立地等推進対策交付金)
62. 원자력시설 방재대책교부금(原子力施設等防災対策等交付金)
63. 삼림정비 지역활동지원교부금(森林整備地域活動支援交付金)
64.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電源立地地域対策交付金)(제20호에 열거된 급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65.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교부금(循環型社会形成推進交付金)
66. 농업/식품산업 강화대책정비교부금(農業・食品産業強化対策整備交付金)
67. 농업/식품산업강화대책 추진교부금(農業・食品産業強化対策推進交付金)
68. 이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離島漁業再生支援交付金)
69. 자연환경정비교부금(自然環境整備交付金)
70. 의료제공체제시설정비교부금(医療提供体制施設整備交付金)
71. 지역주택교부금(地域住宅交付金)(제35호에 열거된 급부금에 해당되는 것 제외)
72. 노동시간 설정개선추진 조성금(労働時間等設定改善推進助成金)

73. 장애인 자립지원대책 임시특례교부금(障害者自立支援対策臨時特例交付金)
74. 농산어촌활성화 대책정비교부금(農山漁村活性化対策整備交付金)(제38호에 열거된 급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75. 농산어촌활성화대책추진교부금(農山漁村活性化対策推進交付金) 제38호에 열거된 급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76. 식품안전/소비자의 신뢰확보대책추진교부금(食の安全・消費者の信頼確保対策推進交付金)
77. 식품안전/소비자의 신뢰확보대책정비교부금(食の安全・消費者の信頼確保対策整備交付金)
78. 삼림정비/임업 진흥추진교부금(森林整備・林業等振興推進交付金)
79. 수산업강화대책추진교부금(水産業強化対策推進交付金)
80. 생물다양성보전추진교부금(生物多様性保全推進交付金)
81. 고령자의료제도 원활운영임시특례교부금(高齢者医療制度円滑運営臨時特例交付金)
82. 지역활성화/생활대책임시교부금(地域活性化・生活対策臨時交付金)
83. 지역소비자행정활성화교부금(地方消費者行政活性化交付金)
84. 육아지원대책 임시특례교부금(子育て支援対策臨時特例交付金)
85. 긴급고용창출사업 임시특례교부금(緊急雇用創出事業臨時特例交付金)
86. 임신건강진사 임시특례교부금(妊婦健康診査臨時特例交付金)
87. 경작방기재생이용 긴급대책교부금(耕作放棄地再生利用緊急対策交付金)
88. 지역활성화/공공투자임시교부금(地域活性化・公共投資臨時交付金)
89. 지역활성화/경제위기대책 임시교부금(地域活性化・經濟危機対策臨時交付金)
90. 지역자살대책 긴급강화교부금(地域自殺対策緊急強化交付金)
91. 방재정보통신설비 정비사업교부금(防災情報通信設備整備事業交付金)
92. 고등학교수업료 감면사업 지원 임시특례교부금(高等学校授業料減免事業等支援臨時特例交付金)
93. 의료시설내진화 임시특례교부금(医療施設耐震化臨時特例交付金)
94. 미승인 약 등 심사신속화 임시특례교부금(未承認薬等審査迅速化臨時特例交付金)
95. 신형 인플루엔자 개발/생산체제정비 임시특례교부금(新型インフルエンザワクチン開発・生産体制整備臨時特例交付金)
96. 지역의료재생 임시특례교부금(地域医療再生臨時特例交付金)
97. 긴급인재육성/취업지원사업 임시특례교부금(緊急人材育成・就職支援事業臨時特例交付金)
98. 개호직원처우개선 임시특례교부금(介護職員処遇改善等臨時特例交付金)

99. 개호기반 긴급정비 임시특례교부금(介護基盤緊急整備等臨時特例交付金)
100. 사회복지시설 등 내진화 임시특례교부금(社会福祉施設等耐震化等臨時特例交付金)
101. 과소지역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101.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過疎地域等自立活性化推進交付金)
102.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農山漁村地域整備交付金)
103. 과소지역사업 보조율차액(過疎地域事業補助率差額)
104. 지역활성화교부금(地域活性化交付金)
105. 개호지원체제 긴급정비 등 임시특례교부금(介護支援体制緊急整備等臨時特例交付金)
106. 정보통신이용환경정비추진교부금(情報通信利用環境整備推進交付金)
107. 북방영토인접지역 진흥 등 사업보조율 차액(北方領土隣接地域振興等事業補助率差額)
108. 농산어촌 6차산업화 대책추진교부금(農山漁村六次産業化対策推進交付金)
109. 농산어촌 6차산업화 대책정비교부금(農山漁村六次産業化対策整備交付金)
110. 도시농촌교류대책추진교부금(都市農村交流等対策推進交付金)
111. 도시농촌교류대책정비교부금(都市農村交流等対策整備交付金)
112. 농지/물보전관리지불교부금(農地·水保全管理支払交付金)
113. 삼림정비/임업진흥정비교부금(森林整備·林業等振興整備交付金)
114. 수산업 강화대책정비교부금(水産業強化対策整備交付金)
115.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社会資本整備総合交付金)(제31호, 제35호 또는 제39호에 열거된 급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116. 수동흡연방지대책조성금(受動喫煙防止対策助成金)
117. 재해발생 현내소방응원활동비 교부금(災害発生県内消防応援活動費交付金)
118. 원자력 재해긴급 소방원조대 활동비교부금(原子力災害緊急消防援助隊等活動費交付金)
119. 피해 아동생도 취학지원 임시특례교부금(被災児童生徒就学支援等臨時特例交付金)
120. 피해농가경영재개지원 교부금(被災農家経営再開支援交付金)
121. 피해사립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정비지원 임시특례교부금(被災私立高等学校等教育環境整備支援臨時特例交付金)
122. 혁신적 의료기기창출 촉진 등 임시특례교부금(革新的医療機器創出促進等臨時特例交付金)
123. 피해지 건강지원 임시특례교부금(被災地健康支援臨時特例交付金)
124. 전력기반 고도화 등 대책교부금(電力基盤高度化等対策交付金)
125. 방사선 감시설비정비 임시특례교부금(放射線監視設備整備臨時特別交付金)
126. 원자력 재해영향조사 등 교부금(原子力災害影響調査等交付金)
127. 농림수산 기반정비사업 후진지역특례법 적용단체 보조율차액(農林水産基盤整備事業

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28. 원자력재해건강관리시설정비교부금(原子力災害健康管理施設整備交付金)
129.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방재대책교부금(原子力発電施設周辺地域防災対策交付金)
130. 지역경제활성화/고용창출 임시교부금(地域經濟活性化・雇用創出臨時交付金)
131.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교부금(地域經濟循環創造事業交付金)
132. 방재/안전사회 자본정비교부금(防災・安全社會資本整備交付金)(제31호, 제35호 또는 제39호에 열거하는 교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133. 생물다양성 보전회복시설정비 교부금(生物多樣性保全回復施設整備交付金)
134. 후쿠시마 정주 등 긴급지원교부금(福島定住等緊急支援交付金)
135. 삼림/산촌다면적 기능발휘대책교부금(森林・山村多面的機能發揮対策交付金)
136. 수산다면적 기능발휘대책교부금(水産多面的機能發揮対策交付金)
137.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운영력 강화 교부금(特定非營利活動法人等運營力強化交付金)
138. 원자력 재해피난지시구역 소방활동비 교부금(原子力災害避難指示区域消防活動費交付金)
139. 방재대책추진 농산어촌 지역정비교부금(防災対策推進農山漁村地域整備交付金)
140. 방재대책추진 후진지역 특례법적용 단체보조율차액(防災対策推進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41. 방재대책추진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防災対策推進社會資本整備綜合交付金)
142. 지역활성화/효과실감 임시교부금(地域活性化・効果実感臨時交付金)
143. 지역저출산대책 강화교부금(地域少子化対策強化交付金)
144. 여성활동추진교부금(女性活躍推進交付金)
145. 후쿠시마재생가속화 교부금(福島再生加速化交付金)(제46호에 열거하는 급부금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
146. 지역의료대책지원 임시특례교부금(地域医療対策支援臨時特例交付金)
147. 연금생활자지원급부금 지급 준비시정촌사무취급 교부금(年金生活者支援給付金給準備市町村事務取扱交付金)
148. 농촌지역자원 등 보전추진교부금(農村地域資源等保全推進交付金)
149. 농촌지역자원 등 보전정비교부금(農村地域資源等保全整備交付金)
150. 다면적기능지불 교부금(多面的機能支払交付金)
151. 치산사업 후진지역 특례법 적용단체 보조율차액(治山事業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52. 도로정비사업 후진지역 특례법 적용단체 보조율차액(道路整備事業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53. 항만정비사업 후진지역특례법 적용단체 보조율차액(港湾整備事業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54. 농업농촌정비사업 후진지역 특례법 적용단체 보조율차액(農業農村整備事業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55. 삼림정비사업 후진지역 특례법 적용단체 보조율차액(森林整備事業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56. 수산기반정비사업 후진지역 적용단체 보조율차액(水産基盤整備事業後進地域特例法適用団体補助率差額)
157. 지역재생전략교부금(地域再生戰略交付金)
158. 지역활성화·지역주민생활등긴급지원교부금(地域活性化·地域住民生活等緊急支援交付金)
159. 지역여성활성추진교부금(地域女性活躍推進交付金)
160. 지방소비자행정추진교부금(地方消費者行政推進交付金)
161. 생활기반시설내진화등교부금(生活基盤施設耐震化等交付金)
162. 보육소등정비교부금(保育所等整備交付金)((제1호에 열거하는 급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163. 산림정비가속화·임업재생정비교부금(森林整備加速化·林業再生整備交付金)
164. 산림정비가속화·임업재생추진교부금(森林整備加速化·林業再生推進交付金)
165. 폐기물처리시설정비교부금(廢棄物処理施設整備交付金)
166. 조수포획등사업교부금(鳥獸捕獲等事業交付金)
167. 후쿠시마원자력재해부흥교부금(福島原子力災害復興交付金)
168. 중간저장시설정비등 영향완화교부금(中間貯藏施設整備等影響緩和交付金)
169. 교육지원체제정비사업비교부금(教育支援体制整備事業費交付金)
170. 인증어린이원시설정비교부금(認定こども園施設整備交付金)
171. 환경보건형농업직접지원대책교부금(環境保全型農業直接支援対策交付金)
172.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조정교부금(特定防衛施設周辺整備調整交付金)(제22호 또는 제40호에 열거된 급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173. 이산화탄소배출억제대책사업비교부금(二酸化炭素排出抑制対策事業費交付金)
174. 피해자건강/생활지원종합교부금(被災者健康·生活支援総合交付金)
175. 피해아동생도취학지원등사업교부금(被災児童生徒就学支援等事業交付金)

#### 4. 각 부처의 요강(방침)

- 각 부처는 요강·요령을 통해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정한 국고지원금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의 산정방법, 교부대상자, 보조율, 교부금액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5. 부처별 사례

- 국토교통성의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社会資本整備総合交付金)<sup>4)</sup>
  - 동 교부금의 요강은 총 14페이지이며, 1) 총칙, 2) 목적, 3) 정의, 4) 교부대상, 5) 교부기간, 6) 교부대상사업, 7) 단년도 교부한도액, 8) 사회자본종합정비계획의 제출, 9) 교부신청, 10) 사회자본종합정비계획의 평가, 11) 지도감독교부금, 12)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경리, 13) 감독, 14) 그 외, 15) 잡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후생노동성의 수도시설정비 국고보조금(水道施設整備費国庫補助金)<sup>5)</sup>
  - 동 국고보조금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면, 첫째 간이수도 시설정비비(簡易水道等施設整備費), 둘째 수도수원개발시설정비비(水道水源開発等施設整備費), 셋째 수도시설재해복구비·지도감독사무비(水道施設災害復旧費·指導監督事務費等)로 3가지 측면에서 보조금이 제시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요강·요령으로 규정됨
  - 이 중 수도수원개발시설정비비의 요강은 총35페이지이며, 1) 통칙, 2) 정의 3) 교부의 대상, 4) 보조대상사업비, 5) 교부액의 산정방법, 6) 교부의 조건, 7) 신청절차, 8) 변경신청절차, 9) 보조금의 계산지불, 10) 교부결정의 통지, 11) 교부결정까지의 표준적 기간, 12) 실적보고, 13) 보조금액의 확정 통지, 14) 소비세 공제세액의 확정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15) 그 외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12페이지까지)

4) <http://www.mlit.go.jp/common/001087220.pdf>

5) <http://www.mhlw.go.jp/topics/bukyoku/kenkou/suido/yosan/01c.html>

- 요강 뒷편에 별표로 1. 구분, 2. 국고보조채택 기준, 3. 보조율, 4. 국고보조대상시설 등의 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1. 구분		2. 국고보조채택기준	3. 보조율	4. 국고보조대상 시설	비고
수도수원 개발시설 정비비	수도수원 개발시설 정비비	다음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업임 1. 수도사업 (1) 자본단가가 90엔/m3 이상인 것 ..... (2) 09년도 이전에 채택된 사업으로 자본단가가 140엔/m3 이상인 것 ..... 2. 수도용 물 공급사업.....	1/3  1/2	수도의 수원 개발에 제공하는 다음에 열거된 시설임 1. 댐, 수로... 2. 해수담수화시설 ..... 3. 1이나 2의 시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설	
	원거리도 수등 시설 정비비	다음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업임 1. 수로의 연장이 7킬로미터 이상인 것 2. 수도수원개발시설 정비비의 국고보조대상 사업과 통합적인것	해당사업이 수도수원개발시설 정비비의 2년에 열거하는 1의 (1), 2의(1)에 관련된 것의 경우 1/3, 동 1의(2), 2의(2), 3에 관련된 것인 경우 1/2	1.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로 한다 ..... 2. 1에 열거된 시설에는 수도광역화시설정비비의 국고보조금 대상이 되는 시설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수도광역 화시설정 비비	특정광역 화시설정 비비	.....	1/3	.....	
	일반광역 화시설정 비비	.....	1/4	.....	
.....	.....	.....	.....	.....	

## 6.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결정 방식

-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재무성(우리나라의 기재부)와 해당 부처간의 조정으로 결정됨
- 사례: 협회건보 국고보조금의 결정 과정
  - 국고보조율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 제1시기 제85회 사회보장심의회의료보험부회 (2015년 1월 9일) : 의료보험제도개혁골자안에 조정중으로 정리하였음
    - 제2시기 제3회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 (2015년 1월 13일) : 1월 11일에 재무성, 후생노동성 대신간의 절충이 실시되어 본회의에서 의료보험제도개혁골자가 결정되었음. 여기서 보조율은 당분간 16.4%로 유지할 방침을 결정하였음
    - 제3시기 2015년도 정부예산안의 각의 결정(2015년 1월 14일): 정부예산안이 각의결정되어 후생노동성의 예산안 주요사항으로서 보조율이 확정됨
  - 관련 기사 발췌: 산케이신문 2015년 1월 7일자

- 2015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 삭감의 초점인 전국건강보험협회(이하, 협회건보)에의 국고보조율에 대하여, 정부는 1월 6일, 현행 16.4%를 당면 유지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보조금의 인하로 협회건보의 재정이 불안정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사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국고보조율에 대해서는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경기악화로 협회건보의 수지가 적자가 바뀌었고 2008년도에 특례로서 국미를 연 1800억엔 증가하여 지금까지 13%에서 16.4%까지 인상하였음.....이후 경기회복으로 저금에 해당하는 준비금 잔고의 적자가 해소되었음.....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성은 당초 사회보장비를 발본적으로 삭감하기 위해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인하여 3년 후에 13%로 돌리려고 후생노동성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보조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7. 일본의 지방재정세입 내역 및 나가사키 국고지출금 내역

&lt;2013년 일본 지방재정 세입내역&gt;

	2012년		2013년	
	결산액(억엔)	비율	결산액(억엔)	비율
세입총계	998,429	100.0	1,010,998	100.0
지방세	344,608	34.5	353,743	35.0
지방양여세	22,715	2.3	25,588	2.5
지방특례교부금	1,275	0.0	1,255	0.1
지방교부세	182,898	18.3	175,955	17.4
<b>국고지출금</b>	<b>154,593</b>	<b>15.5</b>	<b>164,470</b>	<b>16.3</b>
지방채	123,379	12.4	122,849	12.2
기타	168,961	16.9	167,138	16.5

&lt;2015년 나가사키현(長崎県) 국고지출금 내역&gt;

	2014년		2015년	
	당초예산(천엔)	비율	당초예산(천엔)	비율
의무교육비부담금	20,870,023	19.8	22,678,774	21.1
생활보호비부담금	1,739,085	1.7	1,564,586	1.5
아동보호비부담금	3,710,215	3.5	2,529,950	2.4
결핵의료비부담금	14,480	0.0	15,436	0.0
정신위생비부담금	1,455,179	1.4	1,443,228	1.3
보통건설사업비지출금	47,489,686	45.2	48,717,534	45.3
재해복구사업비지출금	2,496,777	2.4	2,345,932	2.2
위탁금	3,525,186	3.4	4,072,972	3.8
·건설사업위탁금	172,677	0.2	274,487	0.3
·기타위탁금	3,352,509	3.2	3,798,485	3.5
기 타	23,722,886	22.6	24,090,895	22.4
나가사키현 국고지출금 총계	105,023,517	100.0	107,459,307	100.0

## <부록 2>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 소하천 정비	50	
6. 농어업기반 정비	80	
7. 배수 개선	100	
8. 방조제 개수·보수		
가. 국가관리	100	
나. 지방관리	7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10. 토양개량사업	70	
11.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 개선	70	
나. 개별시설	30	
다.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액비화(液肥化) 시설)	5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시설)	30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 보조
14. 농기계임대사업	50	
15.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0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녹비작물(綠肥作物)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 부담 5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쓰레기 매립시설	30	
27. 쓰레기 소각시설	서울특별시, 시·군: 30 광역시: 40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10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50	
다. 시지역(읍 이상)	50	
라. 군지역(면 이하)	70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5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7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광역시: 3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70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정액	
38. 경전철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41. 대중교통 지원	90	내역사업 중 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 지원 사업은 70%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44. 지방하천 정비	50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100	
나. 기타	50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70	
나. 큰 나무	50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 장비 보강	50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65. 관광자원 개발	50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50(70)	
나. 경기장	3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70. 청소년시설 확충	서울: 30 지방: 70 ~ 88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77. 한센양로자 지원	5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울: 30,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 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 비 제외)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 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3 분의 2 수준으로 지원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비의 3분의2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0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50	
11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60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가. 개량의 경우 광역시는 10%, 도청 소재지는 20%, 시·군은 3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